



시민건강이슈 2022-09

PHI Issue Paper 2022-09

취약성과 사회 정의

취약성 개념은 건강권 운동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Vulnerability and Social Justice

Can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Revitalize the Health Rights Movement?

[Issue Paper 2022-09] Vulnerability and Social Justice

- Can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Revitalize the Health Rights Movement?

[시민건강이슈 2022-09] 취약성과 사회 정의

- 취약성 개념은 건강권 운동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출판일 2022년 9월 23일

편집인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박사후연구원

필진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박사후연구원

펴낸 곳 (사)시민건강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3길 36, 2층
전화: 02-535-1848 / 팩스: 02-581-0339
누리집: <http://health.re.kr>
전자우편: people@health.re.kr

ISBN 979-11-87195-26-9(95510)

차례

초록	1
Abstract.....	3
1. 서론: 빈곤층 건강보장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사회정의론의 필요성	5
2. 본론: 취약성 이론 고찰	14
2.1. 논의 구성	14
2.2. Fineman의 보편적 취약성 이론	15
(1) 형식적 평등과 최소국가론 비판	15
(2) 보편적 취약성 이론	16
① 취약한 주체(vulnerable subject)	17
② 취약한 사회 제도들	18
(3) 반응하는 국가(Responsive State)	19
(4) 소결	21
2.3. 취약성과 관계적 자율성	26
(1) Mackenzie의 취약성 이론	26
① 자율성, 다시 생각하기	26
② 취약성과 역량접근	28
③ 취약성 유형론	29
(2) Anderson의 관계적 자율성 이론	30
① 자율성과 상호주관적 자율성	30
② 취약성과 자율성의 상호 얽힘	32
③ 과잉취약성	32
(3) 소결	33
2.4. Ten Have의 취약성 이론	36
(1) 생명윤리담론 비판	36
① 자율성 원칙에 갇힌 취약성 개념	36

② 비판적 개념으로서 취약성	38
③ 존재론적 취약성과 특수 취약성	40
④ 집단 범주화와 낙인 문제	41
(2) 취약성에 대한 철학적 관점과 인류학적 취약성	43
① 취약성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	43
② 취약성에 대한 주변부적 접근	44
A. 경험으로서 취약성(Vulnerability as Experience)	44
B. 관계성으로서 취약성(Vulnerability as Relatedness)	45
C. 의존성으로서 취약성(Vulnerability as Dependency)	45
D. '인질되기(Being Hostage)'로서의 취약성	47
③ 인류학적 취약성(anthropological vulnerability)	48
④ 인류학적 취약성이 왜 생명윤리에서 중요한가?	50
A. 보편성	50
B. 수동성	51
C. 긍정성	52
⑤ 윤리적 원칙으로서 취약성	53
⑥ 철학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 연결하기	54
(3) 취약성에 대한 정치적 관점과 특수 취약성	55
① 취약성에 대한 정치적 관점	55
② 특수 취약성과 사회 윤리	55
③ 상호작용과 협력	56
④ 특수 취약성의 사회적 맥락	57
⑤ 취약성을 생산하는 불평등과 권력, 착취	59
(4)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취약성	60
① 세계화 현상으로서 취약성	60
② 신자유주의에 의한 취약성 개념 무력화(Neutralizing)	61
(5) 인권, 정의, 역량, 글로벌 돌봄	65
① 인권 (Human rights)	65



A. 인권과 생명윤리	66
B. 인권의 범위	67
② 사회 정의(Social Justice).....	69
A. 정의 관점의 필요성	69
B. 사회정의의 문제점	70
C. 사회 정의의 범위	71
D. 사회 정의의 관련성(Relevance).....	72
E. 정의 개념의 확장	73
③ 역량(Capabilities)	75
A. 역량과 취약성	76
B. 역량의 제한으로서 취약성	78
C. 역량의 구조적 제약요인	79
D. 역량의 사회성 (Sociality)	79
E. 역량 접근의 장점	81
F. 도전 과제	82
④ 글로벌 돌봄(Global Care)	84
A. 세계화의 영향	84
B. 돌봄 담론의 세계화	85
C. 장점과 과제	85
(6) 소결	86
2.5. 취약성 비판: 취약계층과 낙인	90
(1) Brown의 취약성 연구.....	90
① 시대정신(Zeitgeist)으로서 취약성	91
② 취약 청소년 대상 연구	93
(2) 보건과 취약성	97
① 모호함, 권력 그리고 보건: 보건학 논문에서 '취약함'의 용례	98
② 비판적 논평들	101
(3) 소결	103



3. 결론을 대신하여	106
부록 1: 세미나 제안서.....	110
부록 2: 세미나 참가자 명단.....	113

초록

한국은 상대적 빈곤율이 15%를 상회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의료급여비 지출억제가 정부의 제도운영의 핵심 원칙이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내 일부 의료비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정부가 재정절감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국민 다수의 암묵적 동의에서 나온다. 빈곤층 의료보장 문제는 권리이기보다 여전히 시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근대적 ‘권리’ 개념은 시민 간의 ‘쌍무적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계약론적 정신이 오늘날 ‘공정함’에 대한 주류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빈곤층 의료보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적 재정운영 기조에 동의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정함에 대한 신념, 즉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평등한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대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돌파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근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철학적 토대이자 대안적 담론 전략으로서 ‘취약성’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였다. 최근 취약성은 사회 정의론 측면에서 모두를 하나의 토대로 묶을 수 있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페미니즘 돌봄 윤리 분야에서는 자율적 주체에서 관계적 주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취약성은 특정 집단을 병리화하고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견해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먼저 ‘보편적 취약성 이론’을 통해 국가 제도의 역할을 강조한 Fineman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관계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자율성이 취약성과 배타적 관계가 아님을 주장한 Mackenzie와 Anderson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생명윤리담론의 개인화 경향을 비판하고 ‘인류학적’ 취약성과 ‘특수’ 취약성 개념을 통해 취약성의 철학적 접근과 정치적 접근을 설명한 Ten Have의 논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취약성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한 Brown의 연구를 통해 현실에서 통용되는 취약성 용어가 취약한 이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낙인 찍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atz 등이 수행한 텍스트 분석결과는 보건학 논문에서 취약성 용법의 모호성이 불건강의 구조적 원인을 은폐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고찰 결과, 취약성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입장과 부정적 함의에 초점을 맞춘 입장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와 논리,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취약성을 중심으로 한 운동 전략을 구상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적 개념을 모색하더라도 각 접근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접근을 택하더라도 모두에게 정의롭고 평등한 건강보장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근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bstract

Although Korea has a relative poverty rate of more than 15%, the proportion of recipients of the ‘Medical Aid (MA)’ program, a health care system for the poor, remains at 3%. This is because suppression of the MA expenditure is a key principle of the government in the operation of the program. This is why it is difficult to abolish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of the MA. The power for the government to maintain the consistent fiscal reduction stance comes from the tacit consent of the majority of citizens. The problem of health care system for the poor still tends to be perceived as ‘benefits’ rather than ‘rights’. The modern concept of rights presupposes ‘exchange reciprocity’ between citizens, and the modern social contractual spirit that rights should be balanced with obligations forms the mainstream perception of ‘fairness’ today. Therefore,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it is necessary to break through the belief of ‘fairness’ shared by many citizens who agree with the conservative fiscal management stance, that is, the modern liberal justice perspective that justifies excluding those who are unable to meet social obligations from the subject of equal rights.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as a philosophical foundation and alternative discourse strategy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modern liberal paradigm. In recent years, vulnerability has drawn attention as a concept that can unite everyone as a foundation in terms of social justice.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feminism care ethics, there is a discussion that this concept should be used for the paradigm shift from autonomous subjects to relational subject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critical views that it is only a tool to pathologize specific groups and cover up structural problems. Fineman’s discussion, which emphasized the role of institutions through the ‘universal vulnerability theory’ and the ‘responsive state’ model, was first reviewed in this paper. Next, the discussion of Mackenzie and Anderson,

who argued that autonomy and vulnerability were not exclusive through the concept of ‘relational autonomy’, was reviewed. And Ten Have’s discussion was reviewed. He criticized the individualistic bioethics discourse and explained the philosophical and political approach of vulnerability using ‘anthropological vulnerability’ and ‘special vulnerability’ concepts. On the other hand, Brown’s discussion that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commonly used in reality can oppress, control, and stigmatize vulnerable people was reviewed. Research results by Katz et al. showed that the ambiguity of vulnerability use in public health studies can conceal the structural causes of health inequality.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was confirmed that both the position of paying attention to the positive aspect and the position of focusing on negative implications of vulnerability have valid grounds, logic, and goals. Therefore, even if we plan an action strategy centered on vulnerability or seek other alternative concept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the main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each approach. Most importantly, in order to establish a universal health care system that is just and equal for everyone, we must aim to overcome the modern liberal paradigm regardless of which approach we choose.

1. 서론: 빈곤층 건강보장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사회정의론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은 부유한 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경제적 장벽에 막혀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찍이 ‘전국민 의료보장체계’(1989년)를 달성했다고 하나, 실상은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금과 광범위한 비급여 항목 등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 외에 추가로 각종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까닭도 바로 건강보험의 불충분한 보장성 때문이다. 제도적 보장성의 한계는 별다른 자구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높은 수준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등의 문제적 결과로 나타난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책무인 만큼 역대 정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근래 추진되었던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이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그러한 예로 볼 수 있다. 이는 국정과제 차원에서 이뤄진 시도였지만 결국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까지 나아가진 못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선별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나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최저등급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러한 보완적 정책들만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별도의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Medical Aid)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 비해 (비록 급여 항목에 국한되지만) 진료비 본인부담금 수준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경제력이 부족한 수급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엄격한 수급자격 기준으로 인해 전체 빈곤층의 일부만이 수급자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인구비율)은 대략 15% 안팎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 규모는 줄곧 3% 수준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즉, 의료급여라는 제도적 우산 아래 들어가지 못한 채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빈곤과 건강의 악순환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아프고 그만큼 의료 필요도가 클 수밖에 없다. 이 악순환을 끊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라도 건강 회복에 필수적인 의료이용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의료급여 수급의 선정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 일환으로 안타까운 수급탈락자(또는 신청포기자)를 양산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는 까닭은 재정부담의 증가 때문이다. 의료급여에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의료급여는 1인당 평균 재정소요비가 가장 클 뿐 아니라, 다른 현금성 급여와 달리 (질병과 의료수요의 불확실성이라는) 그 특성상 지출상한선(expenditure cap)을 추계하기도 어렵다. 이는 곧 비용통제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동안 줄곧 의료급여 제도운영의 핵심 원칙은 비용지출의 안정화와 효율화였다. 정부는 수급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도입해 왔고 최근에는 장기입원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특히 재정부처)는 어떤 형태로든 의료급여 재정부담을 건강보험에 전가하길 원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통합 방안을 제기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의 무산을 단지 정부의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은 충분치 않다. 이는 대통령 공약의 철회일 뿐만 아니라 여타 급여들과 정책적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문제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보다 소득기준이 더 엄격한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실제로는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도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아무런 완화 계획조차 내놓지 않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¹ ‘All or Nothing’의 현금급여와 달리 의료영역에서는 꼭 의료급여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장하면 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은, 현실에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 발언이다.

정부의 비합리적 정책대응 논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당성이 위협받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가 높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크게 쟁점화된다고 하더라도, 여론 지형이 정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형성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물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억울하게 수급권에서 배제된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

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 순으로 중위소득 기준이 덜 엄격한 개별급여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져왔다. 애초 재정소요 규모가 작은 급여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계급여보다 먼저 폐지하는 것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따라서 더 가난하고 대상자 수가 더 적기 때문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먼저 폐지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설명은 그 자체로는 일견 타당해보일지 몰라도 전체 정책 전개 과정을 놓고 볼 때 사후적으로 껴맞춘 논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동정여론이 일부 확산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프레임을 이기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프레임을 단순히 전략적으로 기획된 (허구의) 구성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지배적 기류를 반영하고 이에 편승한 것에 가깝다. 즉, 정부가 의료급여 재정절감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국민 다수의 암묵적 동의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²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의 열악한 의료보장성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둘 수 있는 까닭도 사회 구성원 다수의 암묵적 합의에서 비롯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민사회가 빈곤층 의료보장 강화, 더 나아가 ‘실질적’인 보편적 건강보장체계³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맞서야 할 대상은 정부만이 아닌 것이다. 정부의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건강보장체계의 구축을 곧 더 많은 세금 부담과 무기여자들의 ‘무임승차’ 문제로 환원하여 인식하는 다수의 동료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보수적 재정운영에 동조하는 시민들 중 다수는 역설적이게도 의료급여제도가 현재까지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지자이기도 하다. 의료급여를 빈민 통치술의 일환으로 이해하더라도 이것이 통치의 정당성 확보에 유리한 까닭은, 곤궁하다고 해서 더 아프거나 더 일찍 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회구성원들의 공통된 염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의료급여는 이러한 사회적 의지의 산물로서 빈곤층의 건강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이 정책적으로 구현된 것이기도 하다.

² 열렬히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아마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은 ‘주변적’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거나 별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구체적 수치로 포착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정책기조에 대해 무관심하고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관적 태도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소극적 의미의 동의로 이해하면 좋겠다. 침예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중립적 태도는 사실상 기존 방식과 질서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정당화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나타낸다. 물론 현실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재정절감 기조가 지속된다는 사실만 가지고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실증 근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과거 보장성 후퇴 정책을 도입할 때 나타난 여론 동향이나 오늘날 온오프라인 일상에 만연해 있는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임승차’, ‘도덕적 해이’ 담론 등을 감안한다면 상식적 추론으로 충분히 판단 가능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³ 흔히 혼용되곤 하지만 의료보장과 건강보장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보건 의료는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유력한 수단이지만 여러 건강결정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건강보장은 의료보장보다 넓은 범주의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현실의 제도적 의료보장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출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건강보장은 의료보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보건 의료 영역을 넘어서는 포괄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적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보편적 건강보장체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보장이 사회에 속한 누구나 차별없이 누릴 수 있는 보편타당한 ‘권리’라는 데까지 사회 다수의 인식이 이르지 못한 데 있다. 2001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권리적 성격이 법적으로 명시되긴 했지만, 구체적 실효성이 결여된 법적 선언과 달리 현실에서 의료급여제도는 여전히 ‘시혜’의 제도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적 시혜로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온전한 의미의 ‘권리’로써 주어지는 제도적 보장이라면 지금처럼 노골적인 차별과 낙인이 동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나 ‘의료급여진료비 알림서비스’, 그리고 과다의료이용자를 표적으로 하는 사례관리사업 등은 ‘수급자 차별주의’에 기반한 전형적인 정책 사례들이다. 의료급여의 낮은 종별가산율(건강보험대비 75% 수준)과 정신과(입원) 정액수가, 의도적인 과소예산추계에 의한 연례적 진료비 체불 현상은 의료 현장에서 수급자에 대한 진료 기피와 차별, 혐오를 양산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수급자들의 의료보장은 온전한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유력한 답으로 ‘권리’라는 개념 자체에 내재된 한계점을 생각할 수 있다. 권리 개념은 근대 자유주의 이념과 함께 출현한 발명품이다. 근대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권리 개념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간의 ‘쌍무적 호혜성(exchange reciprocity)’을 전제로 한다. 시민의 권리는 의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근대 자유주의적 관점은 지금 사회의 ‘공정함(fairness)’에 대한 주류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별다른 기여 없이 ‘혜택’만 받는 것으로 비춰지는 수급자는 주류 사회 속에서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급여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2006)에 담겨있는 기본 철학적 입장이기도 하다.

“(중략)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것을 차별이라며 반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다른 국민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런 정도는 감수할 수 있고, 또 감수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⁴

이 발언에 담겨있는 이념적 지향을 무엇이라 규정하든 간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하는 이러한 정의관에 동의하게 되면 의료급여가 다소 차별적인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그것을 정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⁴ 인용문에서 말하는 정책변화의 골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금 도입과 선택병의원제 도입이었다. 구체적 정책내용을 포함하여 당시 유시민 장관과 참여정부가 표방한 복지 이념의 노선에 대한 고찰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정성식. 2016. Archer의 형태발생론을 활용한 2007년 의료급여정책변동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실제로 이는 의료급여제도 운영의 온정주의적, 시혜적 접근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인식의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15년 전에 있었던 발언을 다시 소환하여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당시 추진되었던 ‘의료급여혁신종합대책’을 변곡점으로 해서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사실상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정책도입 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의료이용 문제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프레이밍하였다. 이에 대항한 시민사회 진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의료필요도가 높다는 점(통계적으로 이를 보정하면 이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과 정부가 언급한 ‘일탈적’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도 과다이용자가 적지 않으며, 공급자 유인수요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세적 대응전략으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근본원인 중 하나는 아마도 ‘도덕적 해이’ 프레임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유시민식 정의관, 즉 “다른 시민의 도움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입장에서 그만한 불편과 손해는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의 벽을 뚫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시민사회 진영은 이 규범적 명제를 정면으로 논파하기보다 우회하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료급여 재정효율성 기조는 별다른 비판이나 도전 없이 정책 패러다임으로서 견고한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받는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계약이 맺어진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⁵ 돌려줄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건강보장체계를 만들기 원한다면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권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근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된다.⁶ 그리고 자유주의 이념의 여러 분파 가운데 노골적인 복지 축소와 책임의 개인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보다 오히려 유시민 전 장관이 표방했던, 어느정도 (주로 기회의)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자유주의’가 더 논파하기 어려운 이념일 수 있다. 지원은 하되 일정한 제약은

⁵ 아델라 코르티나(김유경 번역). 2021. <가난포비아>. 북하이브.

⁶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자유주의 ‘이념’이다. 자유는 폄하해서도, 폄하될 수도 없는 최고의 보편적 가치다. 또, 자유주의를 고수하는 가운데 기존 자유주의 이념들이 지닌 한계점을 보완, 극복하려는 시도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미 그러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문성훈. 2022.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 사월의책”)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또는 어떤 이념이든 간에 우리가 지향하는 보편적 건강보장체계를 가능케 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적 가치를 현실에서 최대한 구현하고자 하는 대안적 개념, 이념, 사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다.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합리적 상식으로 통용되는 한 의료급여제도의 차별적 운영 행태는 개선되기 어렵다. 이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하다.

의료급여 문제보다 비수급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부담과 낮은 질적 의료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보장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수급자의 ‘사정’이 비수급 빈곤층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껏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료급여 재정을 지금보다 더 ‘효율화’해야만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이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재원이 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제를 수용하더라도 과연 의료급여 재정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통제해야 ‘효율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건강보험 가입자의 1인당 평균 수준으로까지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만큼 절감한 재원을 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투입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지, 예컨대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불충분한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과 비수급 빈곤층의 매우 열악한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일은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 관계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정의롭고 평등한 보편적 건강보장체계의 구축은 결국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특히 빈곤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볼 때 낙인과 차별 없이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비례적 보편주의(proportionate universalism)’를 건강보장체계의 기본 원칙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편주의적 접근을 하되 필요의 정도에 비례하여 자원을 달리 배분하자는 것으로, 선별주의나 기계적 평등주의를 넘어서는 진보적 기획이다. 이러한 비례적(진보적) 보편주의적 접근이 채택될 경우 더 이상 재정문제에 수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보다 과감하게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근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전혀 ‘합당하지(reasonable)’ 않은 생각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정부의 보수적 재정운영 정책기조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정함’에 대한 신념, 즉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평등한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대 자유주의 이념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로 돌아온다.

그동안 보건 의료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권(right to health)’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해 왔다. ‘노동자 건강권’, ‘이주민 건강권’, ‘장애인 건강권’ 등과 같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힘이 부족한 집단을

대변하여 특정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저지하고자 할 때 운동 전면에 건강권을 기치로 내세웠다. 건강권 담론이 가진 힘과 그간의 운동 성과는 결코 폄하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장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건강권 운동이 가진 실천적 영향력의 한계를 고민하도록 만든다. 재정안정성이나 경제적 효율성과 같은 보수 기득권 논리가 사회 담론장에서 지배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탓이 크겠지만, 이에 맞선 대항-담론으로서 건강권 담론이 지닌 한계점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권 또는 ‘권리로서의 건강’ 개념은 이제 학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가운데에서도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었다. 대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하나로서 건강권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이들 역시 많지 않아 보인다.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건강권은 “도달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12조 1항)를 의미하며,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할 ‘자격(entitlement)’ 역시 건강권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⁷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를 실효화하는 데 필요한 권리, 즉 비용지불능력(ability to pay)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는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인식적 경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이면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무기여자를 평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근대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건강권 운동의 실천적 영향력이 미약한 문제는 권리 담론 자체가 지닌 내재적 한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근대 자유주의 패러다임 속 권리 담론(rights discourse)은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는 일종의 ‘고립된 개인주의(isolated individualism)’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⁸ 또한, 1970년대 태동한 인권 운동은 비슷한 시기에 출현했던 신자유주의가 물질적 불평등을 극도로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에 맞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편적 건강보장과 같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과연 기존의 권리 담론에 기반한 운동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유용한지에 대해 근본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건강권 자체의 오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두에게 정의롭고 평등한 ‘실질적’인 보편적 건강보장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운동 전략으로서 건강권

7 손정인, 김창엽. 2016.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보건과사회과학. 43:139-174.

8 Critical Perspectives on Rights. <https://cyber.harvard.edu/bridge/CriticalTheory/rights.htm> (2022년 8월 10일 검색)

9 새뮤얼 모인(김대균 번역). 2022. <충분하지 않다>. 글항아리.

담론이 충분치 않을 수 있음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사실상 건강권의 효력과 범위가 크게 제약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2015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동정심에 호소하는 운동 전략만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공성 강화’나 ‘건강형평성 제고’ 또는 ‘건강불평등 완화’의 경우 운동의 담론 전략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이들 역시 근본적 차원에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내포하고 있지는 못하다. 사람들의 이해와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더 많은 근거, 논리, 서사, 담론, 이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특히 무엇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례적 보편주의가 건강보장체계의 기본원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정함’에 대한 사회 주류적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인식의 토대가 되는 사회 정의¹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소 추상적이고 사변적일 수 있겠으나, 결론은 이렇다. 보편적 건강보장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이들이 저마다 ‘좋은 삶’의 가치들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회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과 원리, 관점으로서 새로운 사회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 가지 가능한 대안적 개념으로서 ‘취약성(Vulnerability)’에 주목하고자 한다. 취약성이란 매우 모호한 다차원적 개념이다. 인간 보편의 실존적 특성이라는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인 이들을 가리키는 ‘취약계층’, ‘취약집단’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피실험집단 보호와 관련하여 인체대상 연구윤리에서 거론되는 의미의 취약성 개념도 익숙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취약성은 이보다 넓게 사회 정의론의 차원에서 모든 존재를 하나의 토대로 묶을 수 있는 개념으로서 그 잠재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특히 페미니즘과 돌봄 윤리 분야에서는 근대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율적 주체 개념에서 상호의존적, 관계적 주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언어로 이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긍정적 접근과 달리 취약성은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권력이 부족한 특정 집단을 ‘병리화’, ‘낙인화’하고 불평등 구조를 은폐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취약성 개념의 진보적 가치와 잠재력에 주목하는 이론가들 사이에서도 주장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연구자마다 이론적, 경험적 지식의 토대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 그리고 해결해야 할 연구 과제가

10 혹자는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정작 그 산물인 ‘정의’를 고집하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이 글에서 고려하는 사회 정의의 개념은 Iris Young이 비판했던 (주로 북미 자유주의 담론에서 논의되는) 분배 패러다임에 갇힌 정의론을 의미하지 않는다. Young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지배와 억압의 제거를 추구하는 정의론, 또는 Nancy Fraser가 제시한 3차원적 정의론과 같이 보다 포괄적이고 해방적인 의미에서의 사회 정의를 염두를 둔 것임을 밝힌다.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취약성 개념을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주요 이론적 논의와 입장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질문, 즉 보편적 건강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안적 사회 정의론으로서 취약성 개념이 가진 가능성(적합성과 실효성)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취약성 이론 고찰

2.1. 논의 구성

취약성과 관련하여 많은 이론적 논의와 그만큼 다양한 관점과 견해가 존재한다.¹¹ 이 글에서는 먼저 취약성 개념이 가진 긍정적 측면에 주목한 이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부정적 함의를 다룬 연구자들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아무래도 이 글의 목적상 보편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취약성의 의미에 주목한 철학적, 윤리적 논의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창적 이론과 주장을 제시한, 또는 우리의 관심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학자, 연구자들의 학술 문헌을 선별하여 가급적 폭넓게 취약성과 관련된 논의들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론가의 논의를 요지만 압축해서 제시할 경우 논지를 전개한 고유한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론가들의 논의에 담긴 풍부한 통찰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급적 문헌의 내용을 충실히 옮기고자 하였다. 그로 인해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적지 않은 편이고, 간접인용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부 문헌만 선별하여 각주로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살펴본 논의가 해당 연구자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상세한 논의를 알기 원한다면 해당 문헌을 직접 살펴볼 것을 권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취약성과 관련된 중요한 학술적 논의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할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각 절에서 소개한 논의들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소결’에 간략히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 글은 금년 5~7월에 진행된 시민건강연구소 ‘빈곤과건강’ 세미나에서 공동으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부록 1 참조)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부록 2 참조)

¹¹ 이 글에서 다루는 문헌은 모두 국외 ‘vulnerability’에 관한 문헌이다. ‘vulnerability’, ‘vulnerable group’과 취약성, 취약함, 취약계층, 취약집단 간 화용론적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disadvantaged group’도 취약계층으로 번역되듯이 영어권 국가보다 폭넓은 범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후 상세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2. Fineman의 보편적 취약성 이론¹²

페미니즘 법학 이론가인 Martha Albertson Fineman은 대표적 취약성 이론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자신의 독창적 이론인 ‘보편적 취약성 이론(Universal Vulnerability Theory)’과 ‘반응적 국가’ 모델을 통해 취약성 문제에 대한 국가와 제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인물이다. 그는¹³ 자신의 이론이 현실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학술 프로젝트의 일종인 ‘취약성과 인간조건 (Vulnerability and the Human Condition, VHC)’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활발한 학술적 운동을 펼치고 있다.¹⁴

(1) 형식적 평등과 최소국가론 비판

Fineman의 취약성 이론화 작업의 궁극적 목표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그는 이를 위해 ‘반응적 국가’라는 대안적 국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회와 국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속한 미국 사회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해물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그는 **형식적 평등**에 치중한 채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미국의 법리 체계를 비판한다. 그가 볼 때 현재 미국 사회에서 평등은 “동등한 대우의 요구(requirement of sameness of treatment)”로만 인식되고 있다. 물론 이는 법정에서 “평등 보호 원칙(equal protection doctrine)”으로 작용하며 인종, 성별, 종교, 출신국가 등의 정체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싸우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에 맞서는 목표가 집단 간 존재하는 물질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목표를 크게 능가하고 심지어 대체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판단한다. 대우의 동일성과 차별 금지로 축소되어버린 평등 개념으로는 체계적인 지배와 종속 문제를 근절할 수 없으며 경제적 불평등 문제 역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불평등한 배분 구조에 도전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두 번째로 국가 역할과 개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개입(간섭)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다. 그는 사회 제도들이 불평등 지속과 확장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합법적인

¹² 관련 내용은 Fineman의 다음 논문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Fineman, M. 2008. “The vulnerable subject: anchoring equality in the human condition”. *Yale Journal of Law and Feminism*. 20(1): 1~24.

¹³ 이 글에서 ‘그’는 성별과 무관한 3인칭 대명사로 사용한다.

¹⁴ VHC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과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적 권한(public authority) 행사를 통해 사회 제도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국가는 불평등을 심화하는 지배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경쟁세력이다. 그런데 ‘국가 개입 최소화’ 원칙은 사회적 평등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 역할을 철회(포기) 하도록 만들면서 불평등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이는 결국 불평등 악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관료제’와 같은 국가역량에 대한 정치문화적 편견은 민영화의 불가피성과 민간 주체의 우위를 정당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효율성이 국가성공의 유일한 척도일 수 없음을 강조하며, 특히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교육과 사법 시스템의 성과를 효율성만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반문한다. 그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공정, 평등, 정의 등의 공적 가치들의 구현은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시장의 이익 추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가 이러한 공적 가치에 따라 공공재가 분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그는 ‘계약(contract)’을 이상화하면서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현실을 비판한다. 이는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사회의 역할을 은폐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가 설정한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민간 주체(기업) 간 ‘계약’은 그 자체로 아무런 독립적 힘이 없다. 그는 개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회와 제도에 의해 생산, 재생산되는 불평등을 자연적 힘의 산물, 또는 법의 교정능력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고 말한다.

(2) 보편적 취약성 이론

공적 책임에 관한 논의에서 취약성 개념은 자주 ‘피해자다움(victimhood)’, ‘박탈(deprivation)’, ‘의존성(dependency)’, ‘병리(pathology)’ 등의 표현과 연관되어 낙인 찍힌 이들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한 예로 공중보건 담론에서 “취약집단”은 흔히 ‘HIV/AIDS 감염인’ 등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Fine man은 인간 조건의 보편적이고, 불가피하며, 지속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취약성 개념을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묻는 중핵에 위치시킨다. 그는 부정적 연관 의미를 벗겨낸다면 취약성은 국가의 평등 보장 의무를 정의할 수 있는 강력한 개념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취약성 개념이 지닌 ‘모호성’ 또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모호성은 개념에 내재되어 있지만 아직 정식화되지 않은 복잡한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그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 숨겨진 가정과 편견을 검토하도록 돕는 ‘휴리스틱 장치’로 취약성을

개념화한다. 이렇게 규정된 취약성 개념은 법을 포함한 정치,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질병, 부상 등의 신체적 취약성은 기존 관계의 단절과 그에 따른 경제적, 제도적 피해를 낳는데, 경제적, 제도적 관계망에서 각자 상이한 위치로 인해 개인마다 취약성의 가능성과 크기에 편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통된 사실은, 피해, 부상, 불행을 겪을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인간통제를 벗어난다는 자각(realization), 즉 어떠한 개인도 취약성을 피할 수 없다는 자각이 우리로 하여금 사회 제도의 지원을 요청하도록 이끈다고 믿는다. 우리는 취약성을 제거할 수 없지만, 사업, 정책, 제도, 구조를 통해 취약성을 중재, 보상,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취약한 주체(vulnerable subject)

취약성의 보편성, 항상성에 대한 이해는 정치, 윤리, 법률이 이러한 인간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 속에서 형성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현재 지배적인 정치 이론과 법 이론은 자유주의 전통의 보편적 인간 주체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때 ‘자유주의적 주체(liberal subjects)’는 여러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사회적 행위자로 가정된다. 따라서 이때 사회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유한 자원을 조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독립적 개인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은 이러한 사회 조직의 비전을 내포하는 법적 메타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자유주의적 주체는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표상된다. Fineman은 그 결과 오늘날 정치적, 경제적, 법적 원칙이 ‘자율성(autonomy)’¹⁵과 ‘자족(self-sufficiency)’, ‘개인책임(personal responsibility)’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주체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정확하고 완전한 보편적 인물로서 ‘취약한 주체(vulnerable subject)’를 사회 정책의 핵심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취약하지 않은 시기인) ‘성인’을 가정하는 자유주의적 주체는 인간 주체의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반면 취약한 주체 접근법은 인간이 일생 동안 다양하고 상이한 상호의존적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구체화한다. 개인적

¹⁵ ‘autonomy’는 자치, 자율성, 자기결정권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자율성’으로 옮겼다.

차원에서 취약성 개념은 불행과 재앙에 대한 지속적 민감성에 기초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적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가능성을 포착한다.

그런데 ‘자율성’ 개념이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비판은 Fineman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의존성 이론은 모든 주체는 관계망에 얽혀 있으며 그것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며 자유주의 모델의 근본적 결함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의존성 이론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자신을 위치시키면서도 (의존성을 취약성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성 접근이 이론적으로 더 큰 잠재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설득하고자 한다.

그는 취약성과 의존성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둘 다 보편성을 지니지만, 취약성은 항상적인 것인 반면에 의존성은 (발달단계와 같이) 일시적인 것이다. 따라서 의존성은 일시적이고 사건적이기 때문에 주류 정치사회 이론가들에게 쉽게 무시되는 측면이 있다. 의존했던 일은 성인이 된 주체에게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이다. 반면 취약성은 항상적 위해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쉽게 덮을 수 없고, 개인과 제도 차원에 모두 존재한다는 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는 데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② 취약한 사회 제도들

Fineman은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의 현실에 대응하는 사회 제도의 구축을 강조한다. 그는 시장변동과 국제정세 변화, 정치적 협상, 편견 등으로 인한 제도들의 (인간의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실패가능성을 고려할 때 은유적으로 사회 제도 역시 취약한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가 볼 때 취약성 접근이 가진 이론적 잠재력은, 취약한 개인의 상황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제도들이 이러한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의 취약성 이론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가 취약성에 더 반응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는 특히 국가의 합법적 권한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제도들을 통해 이 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제도의 역할을 취약성의 감소, 완화, 보상에 필요한 ‘자산(assets)’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때 자산은 불행, 재난, 폭력에 직면했을 때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자원이나 대응기전 등을 의미한다. 누적된 자산들은 각 개인에게 ‘회복력(resilience)’을 제공한다. 자산은 물리적 자산(부, 재산)과 인적 자산(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선천적, 후천적 능력, 교육, 보건, 고용시스템 등), 사회적 자산(가족과 문화집단 등을 포함한 지지 관계의 네트워크, 노조, 정당, 복지국가, 보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는

‘자산을 제공하는 제도들(asset conferring institutions)’이 국가 책임의 영역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국가는 자산들의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를 관리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반응하는 국가(Responsive State)

자산을 부여하는 다양한 시스템 내에서 개인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반면, 다른 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 시스템들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그 결과 특권과 불이익은 전체 시스템에 걸쳐 누적되고, 서로 결합하여 더 파괴적이거나 유익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어떤 한 시스템 내에서 주어지는 특권이 다른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불이익을 중재 또는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양질의 조기교육이 부양가족과 진보적 사회관계망과 결합될 때 빈곤 극복이 용이해질 것이다. 그는 복합적 불평등을 생성하는 교차적 다중 정체성의 측면보다 이렇게 상호작용하며 이익과 불이익을 생성하는 힘과 특권의 시스템 측면에서 자산을 이해할 것으로 제안한다. 다른 이론가들이 전통적인 평등 보호 관점을 확장하여 교차적 다중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과 달리 그의 취약성 접근은 이러한 정체성들이 불평등을 생산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실천들에 주목하는 것이다.

Fineman은 오늘날 지배적인 차별 모델에 의해 평등에 대한 이해가 협소해졌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차별에 기초한 논쟁은 빈곤과 같은 광범위한 불이익 시스템을 해체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현재 차별금지법과 형식적 평등은 (뒤쳐진) 일부 백인 남성들이 직면한 많은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취약성 접근은 현재 차별 모델과 이러한 모델이 사용하는 정체성 범주의 모호성과 변칙들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

자산을 부여하는 제도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면, 왜 일부 개인들이 기존 차별 범주에 따른 불이익을 극복하고 “백인 남자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시스템과 제도들 덕분에 성공에 필요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와 노부모의 돌봄 종사자를 위한 숙소 건축에 반대하는 여성 CEO나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입학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반대하는 부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불법노동자 추방을 요구하는 라틴계 미국인 등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과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구조적 불평등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례인 것이 아니라, 복잡한 방식으로 특권이 주어지는 교차하는 시스템의 수혜자들일 뿐이다.

이처럼 많은 경우 불이익이 정체성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인식은 중요한 정치적 수단(political tool)을 제공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공유되고 피할 수 없는 취약성 개념의 활용은 연합의 형성을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익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이, 공정한 제도적 배분이 시위와 정치적 동원의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제도적 배분이 개인과 집단 전체에 걸쳐 자산을 평등한 방식으로 부여해 왔는지, 혹시 일부 집단에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다.

그는 취약성 접근과 비차별 접근 모두 목표(평등체제 구축)는 동일하지만, 평등이 상상되는 초점과 방식이 다르다고 말한다. 자율적 개인의 신화에 의존하는 형식적 평등 모델은 제도들에 의해 생산된 실질적인 불평등과 특권의 차등적 배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반면 취약성 접근은 국가에게 정체성 범주에 따른 차별방지역할을 넘어서 모든 개인의 공유된 취약성을 동등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그는 정체성 기반 정치의 급진적인 잠재력도 소생되기 어려울 것을 전망한다. 정체성 집단들 간 연합을 구축하려는 지속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연합을 형성하는데 실패해 왔기 때문이다. 평등 보호 모델을 고집하기보다, 공유된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취약성에 수반되는 불평등한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정치 운동을 구축하는 것이 사회에 지속되는 불이익을 해결하고 교정하는 데 훨씬 더 유망하고 강력한 접근법이라는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는 특정 정체성에 대한 차별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평등보호모델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취약성 접근법을 **‘포스트(탈)-정체성(post-identity) 패러다임**으로 명명한다.

전술했듯이 Fineman은 개인 뿐 아니라 제도들 역시 내외부적 힘에 취약한 존재로 이해한다. 취약성 접근의 핵심은 개인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제도적,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개인의 취약성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들의 역할(자원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자산 배분 역할은 철저히 평가될 필요가 있다. 평가의 핵심은 제도들이 우리의 공유된 취약성의 현실에 불평등하게 반응하도록 구조화되었는지 여부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비차별적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평가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강제적 감시는 공적 권한의 정당한 발현체인 국가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그는 자유주의적 주체에 대한 비판이 자유주의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의식한다.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을 사회정치이론의 중심에 놓지 않으면 국가의 민주적 속성이 약화되고 권위주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자율성과 독립성 신화를 기반으로 구축된 현재 시스템은 인간 상태의 종속성 뿐만 아니라 취약한 사람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그는 비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취약성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국가 모델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재개념화된 국가 역할을 ‘반응하는 국가(Responsive State)’로 명명한다.

그는 취약한 주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가 개입이 이뤄지는 반응적 구조를 상상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관건은 역시 포괄적이고 정의로운 평등 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책임을 중심으로 국가가 구성되는지 여부다. 국가는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제도와 구조가 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끼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취약성에 직면한 개인들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을 제공하는 제도들이 강력한 평등 체제의 구현과 유지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는 자산과 특권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더 강력한 민주주의와 더 큰 대중의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4) 소결

Fineman의 보편적 취약성 이론은 현재 한국사회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문제에 충분히 적용해 볼 여지가 있다.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자율적, 독립적 주체로부터 ‘취약한 주체’로의 전환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안적 사회정의론의 필수 요건에 부합한다. 아울러 범주화에 따른 낙인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또 그가 강조한 것처럼 취약성의 보편성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들 사이에서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특히 무엇보다 그의 ‘반응하는 국가’ 모델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평등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복지제도에 대한 잔여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의료급여 정책변동 과정에서 수급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2009년).

“의료급여 수급권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이로 인해 국가가 실현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했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유사한 헌법소원 청구사례들도 아마 비슷한 이유로 기각되었을 것이다. 만약 Fineman이 제시한 관점이 법리 체계에 반영되었다면 위 판결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국가는 더욱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한 가운데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하면서 왜 최고임금은 법으로 정할 생각을 못하는가?”와 같이 불평등 문제 해결과 관련해 충분히 급진적인 수준의 정책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이론적 접근을 참고하여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 관점에서 국가는 보건의료라는 자산(공공재)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를 향해 보편적 건강보장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의 이론은 장점이 명확한 만큼 제한점 또한 적지 않다. 그의 이론에 대해 학계에서 제기된 주요 비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먼저 ‘구체성 결여(lack of specificity)’에 대한 지적이다. 자원이 한정된 현실에서는 불가피하게 취약한 이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의 취약성 이론은 특정 집단을 선별(targeting)하는 데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선정 문제에 있어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존재한다. 어떤 인구집단이 가장 취약한지가 아니라 어떤 제도가 가장 불공정하게 자산을 배분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Fineman은 집단을 구분하는 접근에 반대하면서도 취약 집단으로서 노인을 위한 정책을 옹호한 바 있다. 이 비판에 대해 그는 연령 집단에 따른 정책 옹호가 자신의 보편적 취약성 이론의 핵심 주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자율성을 평가절하하는 그의 이론은 필시 온정주의적(paternalistic)¹⁷ 접근으로 흐를 위험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주체’에서 ‘취약한 주체’로의 전환을 전제하는 그에게 이것은 더 이상 치명적인 비판이 되기 어렵다. 그의 논의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란 더 이상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할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정주의적 접근이라는 사실 자체를 수용하더라도 그의 이론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느 인류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온정주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지 모른다.¹⁸

그러나 과연 지금처럼 온정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 온전히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율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렇게 쉽게 폐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취약성과 자율성 개념이 상충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2.3. 취약성과 관계적 자율성)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6 Fineman 이론에 대한 비판과 반론의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Kohn, NA. 2014. “Vulnerability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Yale J.L. & Feminism. 26:1.

Rich, P. 2018. “What Can We Learn from Vulnerability Theory?” Honors Projects. 352.

17 ‘퍼터널리즘(paternalism)’은 가부장주의, 온정주의, 후견주의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데, 이 글에서는 온정주의로 옮겼다.

18 제임스 퍼거슨(조문영 번역). 2017. <분배정치 시대>. 여문책.

다음으로, 꼭 한계점으로 볼 이유는 없겠으나, 아무래도 법학 이론가이다 보니 국가와 법, 제도의 역할에 논의가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의 논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규범적이고 제도주의적 접근이 강한 그의 국가론은 정치적 접근, 특히 현실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그는 법과 제도를 통해 권력들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듯 하지만, 현실에서 인과 관계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그의 낙관적 기대와 전망은 다소 순진하게 비춰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 국가폭력의 역사와 같이 국가권력의 억압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반응하는) 국가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국가를 의심하는 태도를 갖는 게 어찌면 더 타당할지 모른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정치철학자 Judith Butler 역시 취약성 개념의 보편성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Fineman과 같이 취약성을 반영하여 국가와 사회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취약성이 아닌) ‘불확실성(Precarity)’을 토대로 체제의 지배와 억압에 저항하는 실천론을 탐색하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에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를 이용할 것인지 하는 선택의 갈림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둘 중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Butler와 Fineman 접근의 전략적 적합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게 될 것이다.

한편 Fineman 이론에서 아쉬운 또 다른 대목은 현재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가 ‘회복력’ 개념을 취약성과 대책 관계에 놓으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회복력 개념은 “신자유주의적 윤리적, 심미적 이상(neoliberal ethical and aesthetic ideal)”이라고 볼 수 있다.¹⁹ 회복력 있는 주체에 대한 그의

¹⁹ 레드 에반스와 줄리언 리드는 <국가가 조장하는 위험들(Resilient Life)>(2018, 김승진 번역, 알에치코리아)에서 다음과 같이 회복력 담론을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회복력 원칙은 원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발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제기되었지만, 시장의 도입과 시장 안에서 주체 호명에 기초하는 신자유주의적 개발 모델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귀결되었다. 이제 ‘회복력 있는 주체’는 신자유주의 사상을 가장 확실하게 구현하는 존재다. 취약성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고 그저 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지침에 복종하기 때문이다.”(58~59쪽)

“자유주의의 회복력 담론은, 개인과 집단이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하기보다는 안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쪽으로 작동한다. (...) 회복력 있는 존재가 되려면 주체는 안전을 확보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모두 버리고서, 삶이란 통제 영역을 벗어나 있다고 여겨지는 위험들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 회복력 있는 주체는 자신을 세계에 적응시키기 위해 영구히 투쟁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회복력 있는 주체는 자신의 방식대로 세계를 변혁시키는 것, 그러한 변혁을 가능케 하는 구조와 조건 같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가 아니다. 회복력 있는 주체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 세계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받아들여야 하고, 그 세계에 내재된 불가피한 위험 요인들에 맞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66~67쪽)

강조는 ‘개인화된 자기 관리’라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겹치는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 의도와 맥락은 다른데 단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서 비롯된 오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이론을 관통하는 핵심 문제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Fineman 본인은 신자유주에 대한 도전으로서 회복력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반응하는 국가’를 통해 신자유주의 압력에 맞서 회복력 있는 주체를 생산하고자 한다. 그는 자신의 이론은 “자원 부족을 개인의 실패보다 제도적, 사회적 실패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회복력 어휘가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부합한다는 비판에 반박한다. 이에 대해 비판가들은 (개인이 아닌 제도적 차원에 집중한다는) 강조점의 전환을 위해 굳이 회복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되묻는다. 회복력 용어가 가진 ‘상업적 어감(commercial flavor)’은 그가 ‘자산(asset)’, ‘인적 자본’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 명확히 드러나는데, 이러한 시장친화적 언어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장과 어울린다고 보기 어렵다.²⁰

우리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외한 채 그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채택하여 수정, 활용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현실에서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어찌 되었든 국가를 향해 요구하는 형태의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Fineman 접근이 가진 실효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동안 진보적 운동 담론들이 지배권력에 포섭되어 왜곡되거나 무력화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반추한다면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²⁰ Fineman의 회복력 개념과 관련된 비판적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Benjamin, P. D. & Aldieri, E. 2021. “Precarity and Resistance: A Critique of Martha Fineman’s Vulnerability Theory”. *Hypatia*. 36:321~337.

Petherbridge, D. 2016. “What’s critical about vulnerability? Rethinking interdependence, recognition, and power”. *Hypatia*. 31(3):589~604.



2.3. 취약성과 관계적 자율성

Fineman의 보편적 취약성 이론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의 기본 모델을 ‘자유주의적 주체’에서 ‘취약한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주체의 특성인 자율성 역시 부정적으로 간주된다.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되 모든 책임 역시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의 자율성 개념은 이미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인간 존재의 근본적 가치와 맞닿아 있는 자율성을 부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놓고 최근 페미니즘 이론가들 사이에서는 상호의존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적인 자율성 개념으로서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에 주목하며 이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관계적 자율성 개념을 근거로 하여 취약성과 자율성의 관계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주장한 두 이론가의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²¹

(1) Mackenzie의 취약성 이론

Catriona Mackenzie는 취약성 윤리에 천착해 온 대표적 페미니즘 철학자 중 한 명이다. 취약성은 흔히 필요성, 의존성, 피해자성 또는 무력감으로 연상되는 반면에 자율성은 독립과 자기결정의 이상과 연관하여 인식되고 있다. 그는 취약성과 자율성을 대립적 용어로 이론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바람직한 취약성 윤리는 자율성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를 촉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취약성 담론이 온정주의적이고 강압적 형태의 개입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자율성을 관계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취약성에 대응하는 것과 자율성을 촉진하는 것 사이의 명백한 대립이 해소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보호의 의무는 자율성 촉진이라는 목표 내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이론적 입장이다.

① 자율성, 다시 생각하기

자율성 레토릭은 개입하지 않는 국가를 지지하는 반면에 취약한 주체 모델은 국가 책임에 다시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는 것이 Fineman의 기본 생각이었다. Mackenzie 역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²¹ 관련 내용은 다음 문헌들의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Mackenzie, C. 2013. “The Importance of Relational Autonomy and Capabilities for an Ethics of Vulnerability”. in Mackenzie, C., Rogers, W. & Dodds, S.(ed.) *Vulnerability: New Essays in Ethics and Feminist Philosophy*. New York: Oup Usa. p.33~59.

Anderson, J. 2013. “Autonomy and vulnerability entwined”. in the same book. p.134~161.

레토릭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에 반대하는 데 동의하지만,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번영(flourishing)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율성은 자기 결정적 삶을 영위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율적 주체로 인정받는 지위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적 평등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자율성을 거부하는 것은 취약성 윤리의 실수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Mackenzie와 같은 관계 이론가들에게 자율성이란 사유 능력과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과 같은 인지 능력, 사회 규범과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성찰하는 능력, 자기 성찰에 필요한 내향적 기술, (친밀한 관계와 사회적 협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 정서적 능력, 대안적 행동을 구상하기 위한 상상력 등의 광범위한 실행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적 역량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발전되고 유지되고 행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율성을 위한 조건들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 바로 그러한 관계들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자율성은 자기 성찰을 통해 승인된 신념, 가치, 목표, 욕망,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는 그러한 자율성이 우리가 배태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와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구속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적 연결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수정한다. 또 특정한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그리고 성별, 인종, 민족, 능력, 계층과 같이 교차하는 사회적 결정요인들과 관계 속에서 자아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간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율성을 (제한이 최소화된) 선택의 자유와 동일시하면서, 그러한 선호가 형성되는 배경인 사회적 조건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이와 달리 관계 이론가들은 ‘적응적 선호(adaptive preference)’가 형성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자율성을 촉진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기회가 사회적으로 분배되는지, 사람들에게 이용가능한 적절한 범위의 선택권이 부여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가 생각하는 자율성은 단지 형식적인 기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를 비롯한 관계 이론가들은 자율성에 필요한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토대를 강조하는 것 외에도, 자율성을 ‘능력’이자 ‘지위(status)’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이 두 차원이 서로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기결정적 삶을 영위하려면 자기 자신을 위한 능력과 기회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율적 주체로서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취약성에 대한 대응이 자율성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취약성과 자주 연관되는 무력감과 주체성 상실에 대항하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온정주의의 위험성에 대항하기 위해서이다. 심한 우울증이나 일시적인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취약성은 주체성에 대한 개인의

능력을 손상시켜 자신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경우 취약성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목표는 주체성에 대한 개인의 능력과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취약하다고 확인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적 개입을 할 때 이들의 자율성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온정주의적 접근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형태의 개입은 대상 집단이 스스로 자율적 주체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무력감과 주체성 상실을 악화시키고 병리적 취약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같이 자율성을 관계적인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왜 자율성을 촉진하는 의무가 취약성에 대응하는 규범적 의무와 일치될 뿐만 아니라 그것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지 설명한다.

② 취약성과 역량접근

나아가 그는 관계적 자율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취약성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사회 정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민주적 평등을 촉진하는 가장 유망한 이론적 접근은 Sen과 Nussbaum이 고안한 ‘역량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이라고 생각한다.²² 그는 역량 접근의 장점은 선택(또는 자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것과 선택의 사회적 조건을 결합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선택 개념은 자유 또는 가치 있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역량 개념에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역량 이론가들이 특정한 기능의 성취를 보장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의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 정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그는 역량 이론이 자율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불평등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민주 사회에서 시민들의 서로에 대한 근본적 의무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모두 서로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Anderson의 평등주의적 논의²³를 소개한다. Anderson은 평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역량이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그는 민주 사회를 위한 정의의 충분주의적(sufficientarian) 기준을 제시한 Anderson을 참고하여 ‘역량

²² 역량 접근에 관해서는 이 글의 후반부(80~88쪽)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다.

²³ Anderson, E. 1999.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Ethics*. 109(2): 287~337.

기반 ‘문턱’ 이론(capabilities based threshold theory)’을 제안한다. 그가 말하는 민주적 평등을 위한 역량 기반의 문턱 이론은 대상자 집단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들이 실제로 평등한 시민권(citizenship)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각자 보유한 자원을 기능들로 전환하여 역량의 문턱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표적화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표적화된 형태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온정주의를 피하면서 자율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③ 취약성 유형론

마지막으로 그의 취약성 이론 가운데 잘 알려진 취약성 유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취약성 개념을 하나의 범주로 다루는 Fineman의 접근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Fineman이 질병과 노화와 같이 생물학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즉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취약성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실제 많은 종류의 취약성들이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나 사회적 관계 또는 경제적, 법적, 정치적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예컨대 구치소에 수감된 망명 신청자는 정신질환에 취약하지만, 그 취약성의 근원은 그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환경 때문이다. 또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신체적, 심리적 위해에 취약하지만, 그 취약성의 근원은 타고난 신체적 취약성이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는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녀의 취약성 정도는 그녀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지원과 법적 보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는 Fineman이 그러한 요인들이 취약성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지만, 그의 보편주의적 접근과 취약성이 인간 조건의 ‘지속적’ 특성이라는 주장은 (취약성을 유발하는) 다른 원천들과 취약성 상태 간의 중요한 차이를 모호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1) 내재적(inherent) 취약성과 2) 상황적(situational) 취약성, 3) 병리적(pathogenic) 취약성, 이 세 가지로 취약성을 유형화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내재적 취약성은 존재론적 취약성과 거의 같은 의미다. 상황적 취약성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상황에 따라 발현되는 취약성을 의미한다. 병리적 취약성은 정치적 억압이나 사회 부정의, 착취, 부도덕한 관계 등에 의해 발현되는 취약성을 뜻하는 것으로, 상황적 취약성의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취약성은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는 내재적 취약성과 상황적 취약성의 원인이 상호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취약성의 차이를 범주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실업 스트레스가 건강을 악화시키듯 상황적 취약성이 내재적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종류의 내재적 취약성은 사람들을 상황적 취약성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한된 고용 기회나 불안정한 주거로 인해 상황적 취약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위와 같이 취약성을 유형화한 그의 접근은 특정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병리적 취약성 문제에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춰지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병리적 취약성 문제는 관계적 자율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2) Anderson의 관계적 자율성 이론

Joel Anderson은 Mackenzie와 같이 관계론적 관점에서 자율성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는 자율성을 촉진하는 것이 언제나 모든 유형의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현실에서 취약성이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Axel Honneth의 인정 이론에 근거를 두고서 자율성과 취약성의 관계를 '상호 얽힘(intertwining)'의 관계로 개념화한다. 즉, 실제로 자율성을 개인 주체성의 이상으로 실현하려면 일정 수준과 형태의 취약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자율성의 획득과 유지는 취약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인 관계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취약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있고(avoidable) 원치 않는(unwanted) '과잉취약성(surplus vulnerability)'의 경우일 뿐, 취약성 그 자체는 관계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Anderson의 핵심 주장이다.

① 자율성과 상호주관적 자율성

그는 자율성 개념을 역사적 과정의 산물로 규정한다. Honneth나 Habermas 등 비판 이론가들이 주장한 것처럼 자율성 개념의 본질은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해 왔다. 오늘날 자율적 주체의 자존감이 특정한 법적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개인의 자율성은 무엇인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개인이 더 많은 선택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자율성의 역할과 가치는 더 확장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자율성 개념은 개인화의 형태로 진행되어 온 근대화 과정의 산물이다. 직업, 결혼 상대, 종교, 생활 방식 등에 관한 전통적 제한이 느슨해짐에 따라 개인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이러한 선택 가능성의 확장이 더 잘 선택하기 위한 책임의 확장을 함께 가져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 우리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명확히 하고 복잡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율적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서 오늘날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율성 개념은 주로 자신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개념을 따를 경우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취약성은 항상 자율성을 감소시키는 위험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취약성은 효과적 통제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는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자 하는 경험주의적, 개인주의적 관점이 바로 자기 주장과 자기 보호로 좁혀진, 협소한 자율성 개념을 초래한다고 진단하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능력들의 배치(arrangement)로 자율성을 새롭게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자율성을 인과적 통제의 조건으로 보는 기존 주류 접근법과 대조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의미의 자율성이 육성되고 행사되는 데에는 해석적, 성찰적, 실행적 능력을 포함한 많은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숲에서 길을 찾아 가는 과정에 비유한다. 숲에서 우리는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분별해야 하고, 그 곳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아내야 하고, 가시덤불을 통과할 때 인내해야 하며, 그리고 가끔씩 그 여정이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위해 멈춰 서야 하듯이 자율성 역시 다차원적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자율성의 기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 제도와 대인관계는 자율성의 역량을 획득하기 위한 맥락과 지원을 제공한다. 그는 이러한 자율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은 개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참여에 의해 공동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자율성을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이러한 자율성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독일어로 말할 수 있는 것과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예시로 든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능력은 사회적 배치에 의존할 필요가 없지만,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려면 사회적 의사소통 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독일어로 말하는 것을 상대가 거부한다면 독일어로 대화하는 사회적 관행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는 상호주관적 실천이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적절한 태도, 즉, 다른 사람이 유능한 참여자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율적 행위주체성(autonomous agency)'은 부분적으로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의 관계에 의해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주관적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② 취약성과 자율성의 상호 얽힘

그는 자율성과 취약성 사이의 급진적인 상호의존성을 주장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행위주체성의 ‘자원’에 주목한다. Honneth 인정 이론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타인의 태도가 우리의 자의식을 지지하거나 훼손함으로써 자율적 행위주체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자아에 대한 인식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상호인정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 관계에 대한 위협은 곧 자율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인정투쟁은 자율적 행위주체성의 조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투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즉, 자기 실현의 조건은 상호인정의 사회적 관계의 확립에 달려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는 친밀한 관계(예: 가족, 친구 등)나 법적 지배에 의해 동등한 지위가 보장되는 사회적 구조, 개인이 소속감과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연대주의적 공동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인정에 대한 필요는 우리를 타인들의 변화하는 태도에 취약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이러한 취약성은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구성하는 인정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자율성과 취약성이 서로 얽혀 있다고 말한다. 자율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취약성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 자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정 관계 내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자기신뢰(self-trust)와 자기존중(self-respect), 자부심(self-esteem)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③ 과잉취약성

위와 같이 그는 자신을 스스로 자율적 존재라고 보증할 수 있으려면 상호주관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그가 자신을 보증하는 데 필요한 상호주관적 실천 과정에서 수반되는 취약성을 모두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합법적으로 배제하는 사회적 관행에 의해 발생하는 소외나 배제에 대한 취약성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와 같이 정당하지 않은 ‘오인(misrecognition)’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취약성과 자율성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은 취약성인지 규범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과잉취약성(surplus vulnerability)**’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취약성의 수준이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과잉취약성이 원치 않는 것인지, 피할 수 있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과잉취약성의 제거를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규범적 근거가 확보된다고

설명한다. 즉, 그는 과잉취약성을 초래하는 사회적 관행들 가운데 배제될 위험에 대한 노출이 자율성 실현에 필요한 것보다 높을 경우 규범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잉취약성 개념은 자율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일정 수준의 취약성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Mackenzie가 말한 병리적 취약성 개념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3) 소결

이 절에서는 자율성을 촉진하는 것이 취약성을 완화하는 것과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한 두 학자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관계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자율성의 긍정적 가치를 복원하고자 한 Mackenzie는 Fineman과 달리 우리가 취약성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할 당위적 근거를 자율성 보호에서 찾아야 함을 역설하였다. 인정 이론에 기초한 Anderson은 관계적 자율성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취약성과 상호 얽힘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일정한 취약성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관계적 자율성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함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이론가마다 각자 위치한 조건과 맥락 속에서 어떤 문제를 돌파해야 할 우선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에 따라 동일한 주제에 관한 논점과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Fineman은 정체성 기반 차별 금지와 같이 형식적 평등만 강조하면서 정작 갈수록 악화되는 실질적 불평등 문제에 무관심한 미국 사법체계와 정치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취약성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표 아래 이뤄진 그의 작업 속에서 자율성은 비중 있게 고려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 Mackenzie와 Anderson은 민주적 평등사회의 주체로서 각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호하는 것을 더 중요한 과제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⁴ 따라서 두 이론가의 논의는 Fineman의 이론적 기획을 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이라기보다 그의 취약성 이론이 지닌 부분적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논의를 참고하여 Fineman 이론에 제기된 비판에 대응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극단적인 반근대주의자처럼 근대 자유주의 이념의 폐단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해 자율성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또는 자율성을 긍정하되 이를 이상화하는 경향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절충적 접근을

²⁴ 오해하면 안 될 것은 Mackenzie와 Anderson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자유주의적 자율성 개념에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결정적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정이 필수적이라는 관계적 자율성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들 역시 자율성을 옹호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자율성 촉진이 단지 개인의 무제한적 선택의 자유 보장과 그에 따른 책임 전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Anderson이 설명한 것처럼 자율성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의미가 계속 재구성되어 온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자율성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부정적 함의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새롭게 재정의(또는 재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자율성에 관한 구성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근대 자율성 개념은 거부하면서도 대안적 자율성 개념을 채택하여 지지할 수 있다. Fineman의 보편적 취약성 이론에 관계적 자율성 개념이 결합된다면 자율성이 부정됨에 따라 온정주의적 개입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 비판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Fineman 본인은 ‘자유주의적 주체’를 대표하는 특성인 자율성이 부정된다고 해서 온정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16쪽). 원론적 차원에서 보자면 자율성 약화가 온정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표적화된 개입에 반대하는 Fineman의 보편적 접근이 낙인화 문제와 함께 이러한 온정주의적 개입의 위험성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전제가 되는 주장을 설불리 사실명제로 수용해서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비판가들이 지적대로 Fineman의 접근이 온정주의적 개입으로 흐를 가능성 역시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의 구상은 자산 배분의 제도적 공정성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분배의 제도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지닌 특정 집단에 가중치가 부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정책 개입 단계에서 노골적인 표적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결정 내용이 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경우 해당 집단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선이 강화될 개연성까지 부정하기 어려울 듯 하다.

Fineman이 기대하는 것처럼 ‘취약한 주체’가 보편적인 사회적 모델로 정착된 사회에서는 온정주의가 더 이상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결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체계 변화가 제도 차원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Mackenzie가 우려한 것처럼 아마 정책 수혜자의 주체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온정주의적 개입이 이뤄질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빈곤층과 같이 특정 집단에 대한 표적화된, 따라서 어느 정도 온정주의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수용한다면, Fineman의 보편적 접근이 아닌 Mackenzie의 유형화 접근을 채택하여 그에 맞는 운동 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Anderson의 과잉취약성 개념은 Whitehead의 건강불평등

개념 정의²⁵를 연상케 하는데, 이를 차용하여 취약성 문제를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과 수준의 취약성들 가운데 불필요하면서(unnecessary), 회피가능하고(avoidable), 공정하지 않은(unfair) 것으로 판단되는 취약성을 선별하여 대응하는 접근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취약성 유형화 접근이 갖는, 범주화에 따른 개인화와 낙인화의 위험성 문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 Mackenzie의 유형론에 따르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 취약하다고 분류되는 집단의 구성이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낙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세분화된 취약성 기준은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특정 집단을 취약집단으로 고착화하고 낙인 찍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들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오인’되도록 만듦으로써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Fineman이 보편적 접근을 포기하지 않았던 데에는 일반 시민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러한 낙인화 문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²⁶

즉, Fineman 접근이 자율성을 폐기함으로써 온정주의적 접근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우려하여 관계적 자율성을 촉진하는 Mackenzie 이론을 채택하더라도, 그가 제안한 취약성 유형화 접근까지 함께 수용하는 순간 범주화에 따른 낙인의 위험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취약성 유형론을 포함한 그의 논의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앞서 언급했듯이, 관계적 자율성 개념과 Fineman의 보편적 취약성 이론을 융합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²⁵ Whitehead, M. 1992.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equity and health". Int J Health Serv. 22(3):429~445.

²⁶ 지금처럼 단순히 ‘취약자 대 비취약자’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취약한 가운데 특별히 더 사회적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취약함을 지닌 자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구분한다면 낙인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4. Ten Have의 취약성 이론²⁷

이 절에서는 생명윤리학자 Henk Ten Have의 취약성 이론을 살펴본다. 그는 기본적으로 생명윤리학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 있지만, 사람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취약성 개념을 사회 정의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가 취약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론적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앞서 살펴본 Fineman을 비롯하여 주요 취약성 이론가들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토대 위에 자신의 견해를 더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취약성 이론을 개괄하는 그의 논의를 상세히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 정의를 위한 취약성 개념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통찰들을 얻을 수 있다. 먼저 기존 생명윤리담론의 취약성 개념에 대한 그의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취약성에 관한 기존 철학적 관점들과 그가 새롭게 제안한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에 관한 논의를 고찰한다. 이어서 정치적 관점에서 취약성 의미와 역할,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취약성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법으로서 인권, 사회 정의, 역량, 글로벌 돌봄 윤리가 가지는 잠재력을 검토한 그의 논의를 살펴본다.

(1) 생명윤리담론 비판²⁸

① 자율성 원칙에 갇힌 취약성 개념

그는 현대 생명윤리(Bioethics) 담론이 주로 개인의 자율성 측면에서 취약성 틀을 설정(framing)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러한 “자율성 원칙의 우선화(Prioritizing principle of autonomy)”가 “정의 원칙의 무효화(Neutralizing the principle of justice)”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취약성 개념을 이처럼 개인 차원의 협소한 영역에 가두고 있는 생명윤리담론을 비판하면서 취약성을 사회 정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²⁷ Henk Ten Have의 저서 <Vulnerability: Challenging bioethics>(2016, Routledge)에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²⁸ Ten Have, H. 2016. “The bioethical discourse of vulnerability”. in Ten Have, H. Vulnerability: Challenging bioethics. London: Routledge p.61~92.

우선 그는 생명윤리학에서 취약성 개념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적 개념과 달리 규범적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²⁹ 우리가 어떤 사람을 ‘취약하다’고 특징짓는 것은 단순한 관찰이나 서술이 아닌 규범적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을 ‘취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가치판단인 셈이다. 그는 생명윤리적 개념으로서 취약성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호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누군가 ‘취약하다면 우리는 그가 상처받거나 피해입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생명윤리담론에서 취약성에 대한 규범적 틀이 주로 자율성 존중 원칙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그는 ‘벨몬트 보고서(Belmont Report, 1979)’를 계기로 취약성이 자율성의 결핍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는 취약성과 관련하여 ‘존중’ 원칙과 ‘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취약한 피실험자 집단을 임상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은 주로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의 부족 때문에 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는 이처럼 자율성의 결핍과 제한 측면에서 취약성을 이해하는 생명윤리담론으로 인해 취약성과 정의 원칙 간의 관련성이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율적 존재로서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는 재화를 얻고자 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다. 이때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기존 주류 접근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접근을 따르게 되면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자신의 선택일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취약성은 윤리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취약성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은 단지 개별 주체의 자율성 회복을 위해 필요할 때에만 고려 대상으로 여겨진다. 즉, 취약한 사람들을 (잠재적) 위해에 노출시키는 조건을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은 생명윤리의 역할이 아닌 것이다. 생명윤리담론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사람에게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취약성의 핵심으로 자기 이익을 지킬 능력의 부족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전통과 일치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취약성은 정의의 주요 관심사가 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²⁹ 자연과학 분야에서 취약성은 ‘노출(exposure)’, ‘민감도(sensitivity)’,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의 함수로 정의된다. 이러한 기능적 정의에서 노출은 취약성의 필수적 특징이 아니라 우연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된다.

② 비판적 개념으로서 취약성

그는 생명윤리담론 분야에서 취약성 개념에 대해 제기된 비판적 논의들을 소개한다. 먼저 취약성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환경과학자들은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면서도 단일한 개념정의를 부재한 취약성에 대해 “개념클러스터(conceptual cluster)”라고 비판한다. 개념의 의미에 대한 합의 부재가 보건의로 연구분야에서 명확한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종류의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보호가 어떻게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 제공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개념의 규범적 힘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 다른 비판으로는, 취약성 개념이 사실상 “대화중단장치(conversation-stopper)”와 같은 레토릭에 가깝다는 것이다.³⁰ Ten Have 역시 이 비판과 같이 취약성 용어의 사용이 ‘결백’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것이 진짜 문제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 맥락의 측면에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고려하지 않게 된다. Vladeck은 의료보험의 결함과 의료서비스 접근, 의료 질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취약성을 “완곡어법(euphemism)”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비판은 특정 집단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낙인과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부정적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개인과 집단을 취약하다고 특징짓는 것은 그들에게 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하다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labeling)이고, 그들은 단지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로 간주된다. 그는 그러한 꼬리표가 ‘취약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법적 개입의 생명정치(biopolitics)에 정당성을 제공해준다고 지적한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취약성 개념이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생명윤리담론에 도입되었지만 그 자체로 해당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 학자들은 취약성 개념이 이미 생명윤리담론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취약성 개념은 생명윤리 연구분야에서 주로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이라는 의미로 프레임되어 왔다. 이와 달리 그는 ‘비판적 개념(critical concept)’으로서 취약성의 가치에 주목한다. 그는 현대의학 연구 분야에서는 열악한 여건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이용하려는 유혹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³⁰ Vladeck, BC. 2007. “How useful is ‘vulnerable’ as a concept?” Health Affair (Millwood). 26(5):1231~4.

취약성 개념을 거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임상 시험에서 취약 집단에 대한 도덕적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는 장기 매매(organ trade)에 관한 논쟁과 ‘장기이식 상업주의(transplant commercialism)’에서 분명해진다. 그는 우리가 그들을 취약하다고 식별함으로써 적어도 그들이 처한 곤경이 더 잘 드러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취약성은 그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는 이처럼 취약성을 강조함으로써 논쟁을 개인의 의사결정 수준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취약성 개념은 장기를 매매하는 것이 상호 자율적 거래라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장기 매매 논쟁이 취약성이 생명윤리담론의 일반적 범위를 넘어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즉 현상을 탐색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휴리스틱 장치’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한다. 장기 매매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요점은 장기를 파는 이들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강압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즉, 취약성 관점에서 보면 장기 매매가 자유로운 개인 간 거래로 표현되는 것은 장기를 파는 이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대한 위반 때문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취약성 개념은 손상되기 쉬운 정도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이나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들이 사는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고 말한다. 즉, 가난과 장기 매매 사이의 비극적 선택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 때문에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것이다. 그는 이 선택을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공정한 구조적 요소로 인해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선택의 제한 문제를 감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그는 공중보건(public health) 분야에서 취약성 개념이 채택된 것이 자율성에 집중된 관심에서 벗어나 취약 ‘집단’을 야기하는 상황적 요인에 주목하도록 만드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취약성이 공중보건 개입의 인구집단 개념을 변화시켰다고 말한다. 취약성 개념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다른 집단보다 더 위해에 취약하게 만드는 근본적 메커니즘을 조사하고 교정하도록 만드는 더욱 정교한 관점을 장려한다는 것이 그의 인식이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관점이 취약성과 정의를 연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③ 존재론적 취약성과 특수 취약성

취약성 유형과 관련하여 여러 표현이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 그는 취약한 사람들을 크게 본질적으로 취약한 이들과 그들이 속한 사회에 의해 취약해진 이들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를 ‘**존재론적(ontological) 취약성**’과 ‘**특수(special) 취약성**’이라는 용어로 정의한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 학자들은 주로 (모두를 통합하고 서로 돌보도록 이끄는) 존재론적 취약성 개념의 사용을 선호하고, 개발도상국 학자들은 주로 특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즉, 국가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취약성 개념의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는 취약성 용어를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을 의미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는 Kottow의 주장을 소개한다.³¹ Kottow는 사람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특정한 외부 조건들에 대해서는 취약성 용어 대신에 ‘민감성(susceptibil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모든 사람이 취약하다고 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추가적 보호가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취약성을 비활성화(inaction)시키는 ‘자연화’에 반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취약한 것이 인간 본성의 특성만을 의미하게 될 경우 취약성은 감소하거나 교정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존재론적 취약성과 특수 취약성을 구분하는 문제에 몰두하기보다 사람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Ten Have는 이러한 접근에 대해 철학적 해석보다 정치적 담론을 우선하는 입장이라고 정리한다.

그는 생명윤리 분야에서 취약성 유형학을 다루기 위해 그동안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전략이 추구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하나는 특별 보호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보편적 취약성에 관한 정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른 전략은 공통 분모를 찾아서 취약성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는 자율성 결핍을 다양한 유형의 취약성에 대한 공통 분모로 정의하게 되면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한다. 하나는 존재론적 취약성의 전형적 의미를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 취약성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은 이제 자율성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만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즉, 그는 이 전략을 따르게 되면 취약성의 철학적 담론은 쫓겨나며, 취약성의 정치적 담론은 현대 생명윤리담론을 통해 무력화된다고 말한다.

³¹ Kottow, MH. 2003. “The vulnerable and the susceptible”. Bioethics 17(5~6): 460~471.

④ 집단 범주화와 낙인 문제

취약집단 분류가 너무 광범위해지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Ten Have 역시 취약계층 목록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한 집단 내 모든 개인이 단지 같은 범주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취약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학자들 사이에서 ‘범주화(categorization)’의 역효과, 즉 범주화가 차별적이며, 온정주의적일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범주화에 대해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취약한지 조사하는 상황적 접근법 역시 그 구체화 과정에서 다시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유혹을 받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취약한 인구집단을 식별하려면 공동체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범주화에 대한 비판은 집단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개별적 취약성 수준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취약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결정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개인 책임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취약한 집단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임파워먼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의 취약성에 대한 공통된 특성과 결정요인을 다루는 정책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그는 취약성 용어가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그는 인구집단을 취약하다고 식별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차별과 오명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특정 집단의 건강이 그들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조건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적절한 대응은 이러한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는 취약한 인구집단을 식별하는 요점은 정확히 그들의 곤경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행동을 촉구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러한 초점이 낙인과 고정관념의 위험을 수반한다는 주장은 자율성의 윤리적 틀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즉, 취약계층에 속한 개인은 스스로 보호할 힘이 부족하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오명이 씌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집단을 식별하는 목적은 취약성이 개인적 결핍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개인이 속한 사회적 환경을 비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취약계층이라는 언어는 사람들과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별 결정요인을 식별하는 데 유용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취약성 상황을 조사할 때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취약해지는 이유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특수 취약성 개념에 대한 이해의 확산이 존재론적 취약성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가 볼 때 자율성 존중이라는 윤리적 원칙의 적용 범위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취약인구집단 연구’의 핵심이라고 그는 말한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조건과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상황이나 삶의 순간에 반드시 취약해지기 마련이다. 즉, 취약성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규칙인 것이다. 그는 이 결론이 보건 의료 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우리들 모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취약집단의 구성원이 될 것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존재론적 취약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지 않다. 비록 인간이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모두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삶의 특정 기간, 즉 어렸을 때,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겪고 있을 때, 취직과 소득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늙었을 때, 우리 모두 특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그는 취약성의 실제적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개인, 집단, 인구를 취약계층으로 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누가 그러한 책임이나 의무를 질 것인지 질문한다. 보건정책 분야에서 취약성은 주로 사회적 결정요인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적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취약계층의 복지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정부와 정책 입안자에게 있다고 인식되어야 하고, 정책은 개인보다 집단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그는 개인의 역량강화를 돕고 그들의 취약성을 줄이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취약계층을 세 가지 도덕적 범주로 구분한 Brock의 분류법과 같이,³² 모든 취약한 인구집단이 동일한 ‘도덕적 권리(moral claim)’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어서 그는 취약성을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으로 좁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연대, 정의의 윤리적 원칙과 관련된 보다 넓은 규범적 관점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철학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이 양립할 수 있을지 모색한다.

³² 첫째, 취약성 자체가 부정의를 구성하는 조건, 둘째, 도덕적으로 부당하지만 부정의하지는 않은 조건, 셋째, 개인이나 집단 자체에 책임이 있는 조건. 여기서 마지막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과 같은 도덕적 요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Brock, DW. “Health resource allocation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Marion Danis, Carolyn Clancy, and Larry Churchill (eds.). *Ethical Dimensions of Health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83~309.)

(2) 취약성에 대한 철학적 관점과 인류학적 취약성³³

그는 생명윤리담론이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오늘날 지배적인 자유주의 전통의 맥락 속에서 취약성을 해석한다고 말한다. 이때 취약성은 자율성의 감소, 통제력의 상실, 자기결정의 부족을 의미한다. 그는 취약성 관점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들이 번번히 자율성 논의로 돌아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그는 취약성이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철학적 관점이 생명윤리담론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그는 ‘존재론적’ 취약성보다 ‘인류학적’ 취약성이라는 용어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이 제시한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은 ‘보편성(universality)’과 ‘수동성(passivity)’, ‘긍정성(positivity)’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① 취약성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

그는 생명윤리 분야에서 취약성에 관한 ‘실용주의적 접근(pragmatic approach)’이 강한 점을 지적한다. 실용주의적 접근에서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따라서 취약성이 모든 인간의 공통 조건이라는 철학적 관점은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법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다. 일종의 ‘응용윤리(applied ethics)’로 간주되는 생명윤리 분야에서 실용주의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는 까닭에 취약성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실용주의적 접근과 함께 생명윤리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는 접근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역동적(dynamic) 접근방식을 언급한다. 이 접근의 요점은 취약성이 개인의 고정적이거나 영구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실제 생명윤리 분야는 주로 피실험자의 취약성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보호를 위한 징후가 더 구체적이고 필요성이 클수록 표적화된 보호 개입을 더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접근에서는 취약성에 대한 기능적 정의의 세 구성요소 중 하나인 ‘노출’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간주된다.

33 Ten Have, H. 2016. “We are all vulnerable: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vulnerability”. in Ten Have, H. Vulnerability: Challenging bioethics. London: Routledge p.93~123.

② 취약성에 대한 주변부적 접근

철학적 관점에서 취약성은 인간 상태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중 하나로 이해되며, 이는 흔히 존재론적 취약성이라고 불린다. 취약성이 인간의 본질을 나타낸다는 생각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교화되는데, 그는 취약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취약성을 ‘자연적 불완전성(natural imperfection)’으로 이해하는 접근이다. 이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정되지 않은(undetermined)” 존재이기 때문에 취약하다고 보는 철학적 관점이다.

두 번째는 취약성을 ‘신체적 쇠락(bodily corruption)’으로 이해하는 접근이다. 이는 신체를 기계적 실체로 파악하는 데카르트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관점으로, 인간이 신체 때문에 질병, 노화, 장애, 죽음, 부상에 취약하게 된다면서 신체를 하나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데카르트 이원론은 수명을 연장하고 기능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의과학이 발전하는데 기여했지만, 환자를 기계적 신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생의학 모델에 대한 비판으로 통합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환자가 사람임을 강조하는 생명윤리가 출현하였다. 그러나 그는 생명윤리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도덕적 원리는 여전히 인간 신체에 대한 이원론적 관점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의 역량강화는 신체를 개인의 소유물로 개념화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은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자율적 주체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그는 취약성을 ‘경험’, ‘관계성’, ‘의존성’, ‘인질되기’ 등으로 이해한 철학적 관점들을 소개한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앞서 소개한, 영미 분석철학에 의해 지배되는 주류 관점들에 비하면 주변부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는 유럽 철학, 페미니스트 윤리학, 의철학, 비서구 생명윤리학에서 영감을 받은 취약성에 대한 이러한 주변부적 접근법(peripheral approach)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 논의들을 토대로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을 고안하여 제시한다.

A. 경험으로서 취약성(Vulnerability as Experience)

인간 주체는 몸과 마음의 통일체라는 관점은 ‘체현(embodiment)’의 데카르트 모델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메를로 폰티의 이론은 인간의 경험이 신체가 물리적 실체와 다르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하면서 객관적, 물리적 신체와 살아있는 신체 사이에 구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의학은 보통 검사, 진단, 개입의 대상으로서 신체에 관심을 갖지만, 인간은 오직 하나의 통일체로서 자신을 경험할 수 있다. 내가 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또한 내 몸과 소유권의 관계가 아니다.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내 몸이다. 이와 비슷한 사유들이 유럽 인류학적 의학 전통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한

예로 독일 의사 Plügge는 몸은 세계와 나 사이를 중재한다고 말하였다. 의학이 인간의 과학이 되려면 인간 실체의 통합성을 존중해야 하며, 인간의 통합된 비전을 전제해야 한다. Plügge는 일반적으로 신체의 중재 역할이 주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건강하고 활동적일 때 우리는 몸에 집중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프거나 괴로울 때 몸은 스스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체현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취약성은 우리 세계가 유한하고 연약하다는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B. 관계성으로서 취약성(Vulnerability as Relatedness)

인간의 몸이 ‘살아있는 몸’으로 경험될 때 그것은 반드시 세계에 대한 개방성을 암시한다. 신체를 통해 인간은 항상 관계 속에 있게 된다. 살아있는 신체는 다른 사람, 사물, 환경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존재는 항상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의 특징은 항상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 의철학의 현대적 부활의 중요한 동기였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리되고 독립적인 자아라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세상 속에 위치해 있고, 타인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의해 정의된다.

인간 삶의 상호연결성은 비서구 철학에서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철학에서 개인은 관계에 포함되고 공동체에 의해 정의된다. 몸이 사람들 간의 교류와 호혜의 기초라는 관점에서 볼 때 취약성은 생물학적 또는 실존적 결핍이 아니라 긍정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것이 세계에 대한 개방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 세계는 필연적으로 타인들을 포함한다.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부정적 영향도 줄 수 있다. 취약성은 타인과의 충돌에 있다. 타인과의 상호관계는 불확실하고 모호하다. 우리는 타인에게 맡겨져 있다. 즉, 항상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취약성이 개인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변화 사이의 관계에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취약성은 상호성으로 특징지어진다. 그것은 체현된 삶의 관계성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조건이다. Butler는 인간은 “처음부터 신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자신을 넘어 자신의 것이 아닌 삶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C. 의존성으로서 취약성(Vulnerability as Dependency)

인간이 필연적으로 관계에 내재되어 있다는 관점은 특히 페미니즘과 돌봄 윤리에서 취약성에 대한 또 다른 관점으로 확장되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근본적 의존성이다. 인간은 관계적이지만 관계가 평등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Fineman은 취약성은 “인간 조건 속에 내재된 분명하고 지속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요점은 의존성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면 책임의 재정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사용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가 허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Ten Have는 이 허구성으로 그동안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적 합의가 지속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취약한 주체에 대한 집중은 우리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재고하도록 강요한다. 취약성은 인간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 간 관계도 반영한다. Butler의 최근 연구작업의 중심에는 인간의 삶은 필연적으로 익명의 타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위태롭다는 가설이 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반드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노출되어 있다. 이 관계성은 우리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

Butler의 관점이 ‘존재론’적인지 여부는 활발한 논쟁의 주제인데, 그의 주장을 ‘관계적 존재론’보다 ‘근본적 유한성의 철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강요하는 초월”에 노출되어 있다. 이때 신체성은 생물학적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적 범주로 해석된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노출의 경험이며 자기 통제의 궁극적인 불가능”이다. 이를 두고 Butler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다”고 표현한다.

Ten Have는 Butler가 인간의 공통된 취약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존재론적 취약성과 같이) 인간에 대한 공통적 개념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 취약성은 삶 자체와 함께 나타나며, 자아의 형성에 선행한다. 즉, 취약성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조건에 가깝다. 또한, 취약성 문제는 상호의존성이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에게 공유되는 전형적인 취약성이 단순히 상호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가 상처받기 쉽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내가 그에게 상처받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상처를 받기 쉽다. 몸은 다른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 차이에도 굴복한다. 그러한 불평등 때문에 항상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는 취약성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이 남용되고 착취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폭력과 권력의 맥락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Fineman과 Butler에게 의존성은 부정적 조건이 아니다. 그들은 이를 한계가 아니라 자원으로 이해한다. Butler에게 취약성에 대한 강조는 새로운 휴머니즘인 비폭력 윤리를 발전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의존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그는 윤리적, 정치적 담론에서 주권자라는 관점을 취약한 주체 관점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ineman에게 취약성은 사회 제도를 재구성하고 사회적 불평등에 도전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취약성의 가치는 권력과 사회적 재화,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검토하고, 단순히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는 데 있다.

D. '인질되기(Being Hostage)'로서의 취약성

Emmanuel Levinas(1906~1995)는 취약성에 대해 가장 급진적인 견해를 제시한 프랑스 철학자이다. 그의 이론은 취약성이 존재론적으로 다른 윤리적 원칙보다 우선하며 돌봄 윤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강력한 동기 부여라고 주장하는 데 자주 인용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의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타인, 세상과 연관될 수 있다는 의미의 자율적 실체가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관계성은 사유하고, 성찰하고, 결정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철학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총체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만, 외부 세계를 객관화하고 주체를 개별화하는 것은 그의 견해로는 불가능하다.

Levinas는 관계의 경험은 인위적 사상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과의 대면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아와 다른 자아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에게 “진정한 결합은 인위적 통합이 아니라 대면하는 결합(togetherness of face to face)”인 것이다. 그는 관계성은 윤리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윤리는 존재론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최초의 철학”이 된다. 그리고 그는 얼굴을 타인의 초월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활용한다. 타인의 얼굴은 무조건적인 윤리적 요구를 부과하면서 자신에게 명령한다. 얼굴은 항상 독특하고 개성적이지만 추상적이고 벌거벗겨져 있기도 하다(nakedness of the face).

그는 얼굴은 살인에 대한 유혹과 동시에 살인에 대한 금지를 유발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얼굴이 드러내는 것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 내 앞에 있는 연약한 상대방을 죽이지 말 것, 그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말 것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무엇보다 그것은 상대방을 돌보고, 상대방의 타자성(otherness)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부과한다. 취약성은 자아의 이기주의를 전복시키고,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는 타자와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우리가 취약성이 인류를 개방시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고 말한다. 그 만남은 타자(예를 들어, 과부, 고아, 빈민, 이방인)의 고통에 반응하게 만든다. Levinas의 표현대로, “아무도 자기 안에 머무를 수 없다. 인간의 주체성은 타인에 대한 책임이며, 극단적인 취약성이다.” 그는 타자의 도덕적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인간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취약성은 “힘없는 자의 힘(the power of the powerless)”을 불러 일으킨다. 타자의 연약함이 드러내는 윤리적 요구가 자아를 구성한다. 타자와 마주쳤을 때 나 자신은 노출되고 취약해진다. 그리고 타자를 인정하고 그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 나를 하나의 주체로 정의한다. 이렇게 자아는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타자와의 근접성은 존재론의 범위 밖에 있다. 따라서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는 존재론보다 먼저, 그리고 우리의 세계를 둘러싼 사물보다 먼저이다.

그는 나를 한 개인으로 만드는 것은 타자에 대한 피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응답책무(answerability)’에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내 중심성의 위치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수준만큼 나는 취약한 이들을 위해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나”가 된다. Levinas는 이렇게 취약성의 강력한 함의를 정식화한다. 취약성은 즉시 우리를 윤리적 관계로 이끄는 데, 이때 윤리는 “우리를 타자에게 개방하는 존재의 파괴”인 것으로서, “타자를 위하는 것(being for the other)”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것이 된다.

그에게 타자의 도덕적 우선순위는 선택이 아니다. 나 자신보다 타자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취약한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는 대칭적이지 않다. 타자의 얼굴은 책임 있는 자아를 구성한다. 이것은 내가 그것을 원하던 원하지 않든 간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동의나 자유계약에 기초하지 않는다. Levinas에 따르면 타자에 대한 이러한 책임은 취소될 수 없다. “얼굴의 근접성(proximity of the face)”은 “방문(visitation)”이다. 그것은 나를 부르고 나를 독특하게 만든다. 나는 이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의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고, 이것은 나를 책임감 있게 만든다. 나는 타자에게 무관심할 수 없다. 이것이 Levinas가 취약성을 ‘인질되기(Being Hostage)’로 설명하는 이유다. 주체로서 나는 “타자들의 대체 불가능한 인질”이다.

③ 인류학적 취약성(anthropological vulnerability)

이상의 철학적 고찰을 토대로 그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취약성의 핵심 특성이며, 이것이 취약성을 윤리학의 기본 개념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취약성의 윤리적 중요성은 동시에 취약성 개념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만약 취약성이 인간의 기본적 상태로 이해된다면 어떻게 취약성이 진정한 윤리적 원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서술적 접근에서 규범적 접근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하지만 그는 취약성의 존재론적 사실에서 윤리적 의무의 근거를 찾는 것을 ‘자연주의적 오류’³⁴라고 볼 수 없다고 확인한다.

그는 존재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Butler, Fineman, Levinas 논의를 적극 활용한다. 이 학자들은 ‘취약한 주체’를 강조하면서, 다른 개인과 관계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주체라는 새로운 이해를 도입한다. 이는 주체가 취약한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실제로 존재하는 주체가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취약성이 주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³⁴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는 윤리적 판단을 사실 판단과 동일시하는 인식적 오류를 가리킨다.

그에게 이러한 철학적 관점은 윤리를 위한 또 다른 존재론적 틀이다. 이 관점들은 단순히 자율적 주체를 취약한 주체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얽혀 있는 존재론과 윤리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Butler의 생각을 적극 따른다. Butler에게 존재론은 존재의 근본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해석의 맥락 안에서만 '존재'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몸이 된다는 것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맥락 밖에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Butler에게 취약성은 보편화된 인간의 조건이지만 '인간화'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인간의 사회적 관계성이 윤리적 책임을 낳는다는 관점은 취약성을 대상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되기(becoming)'의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재구성한다.

따라서 그는 존재론적 취약성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에게 취약성 개념은 스스로를 대안적 존재론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율적 주체와 자유주의 존재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편적인 인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Fineman의 논의를 상기한다. 의존성의 필연성은 그에게 인간 조건의 결정적인 특징이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취약하고, 따라서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Ten Have는 인간 조건의 보편적인 특성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발생시킨다는 그의 주장이 존재론적 사실에 기반하여 규범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Fineman의 주장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의 의존 조건으로부터 도덕적 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Robert Goodin의 논의를 고찰한다. Goodin은 모든 의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비대칭적이고 기본적 욕구가 위태로울 때에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하였다. 의존성이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수반할 때 남용과 착취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의미를 만든다는 그의 주장에서는 의존성 그 자체가 아니라 의존성의 불평등이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존재론적 조건 이전에 책임으로 이어지는 타인의 상태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존재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이와 유사한 반전(전환)이 Fineman 이론의 기초가 된다고 말한다. Fineman에게 취약성은 보편적인 동시에 특정한 조건이다. 모두가 취약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자원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 인해 더 취약하다. 그렇다면 왜 취약한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그가 생각할 때 Fineman은 모든 사람은 일정 수준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가능한 한 개인의 역량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과 제도적 자산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Fineman은

사회적 조건이 같지 않기 때문에 취약해진 사람들에게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취약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Ten Have 역시 취약성과 관련된 의존성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는 이것을 일부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기존 사회적, 제도적 배치의 결과로 해석한다. 이것은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과 같은 의존의 조건이 아니라, 특정한 '존재론'을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윤리적 판단이 선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가 볼 때 이것은 취약성 윤리의 기초가 되는 존재론적 취약성이 아닌 것이다.

그는 Levinas 철학에서도 존재론이 윤리보다 우선시되고 있지 않은 점을 상기한다. Levinas는 타자의 얼굴과의 만남에서 근본적인 윤리적 경험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존재론은 윤리를 벗어난 중립 조건이 아니다. 나는 타자의 얼굴 앞에서 나에게 부과된 책임을 통해 주체가 된다. 나는 이 윤리적 관계 이전의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타자에게 복속된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든 없든, 그와 가깝든 멀든, 타자의 근접성은 나를 고유한, 타자를 위한 존재로 만든다.

그는 이러한 철학적 고찰을 통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한다. 첫 번째는 (Levinas와 Butler가 말한 것처럼) 존재론과 윤리는 얽혀 있다는 점이다. 존재론은 확실히 윤리보다 앞서 있지 않다. 따라서 그는 두 번째 결론으로, '존재론적' 취약성보다 '인류학적' 취약성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용어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유한한 몸을 가지고 있고 불가피하게 사회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타인들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연약함(fragility)' 또는 '불안정함(precariousness)'으로 특징될 수 있음을 더 잘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인류학적' 취약성은 미리 주어진 정태적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서로에게 열려 있고 책임지는 인간의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데 더 적합한 용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④ 인류학적 취약성이 왜 생명윤리에서 중요한가?

그는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은 생명윤리담론에서 보편성, 수동성, 긍정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며, 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 보편성

이 보편성은 사람들이 동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 몸은 동시에 우리의 개별성과 주체성의 발현이다.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은 각 개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인류학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위해를 입기 쉽다. 누구도 취약성을 피할 수 없다. 위해를 입을 가능성은 모든 인간에게 지속적인 위협이며 우리는 누가 언제 위해를 입을지 모른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인류학적 취약성을 인정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의 가능성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인류학적 취약성은 취약계층 구분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특정 범주의 구성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취약한 상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Titmuss의 헌혈에 대한 연구와 연결 지어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피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취약함은 모든 사람이 같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혈액 공급에 관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은 헌혈자의 이타주의에 의존한다. 취약성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타주의 윤리는 장려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매혈 시장이 도입되고 혈액이 상업적 상품으로 간주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취약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B. 수동성

그는 취약성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 존재는 근본적으로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자율성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며 육성될 필요가 있다. 이때 취약성은 자율성의 결핍이 아니라 자율적 주체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그는 이러한 생각이 Levinas 철학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말한다. 개인의 자율성이 타자의 취약성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이 책임은 내가 자유로워지기 전에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Levinas가 말한 취약한 사람들의 수동성이다. 즉, **취약성이 자율성보다 우선한다.**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은 우리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성과 능동성보다 민감성과 수동성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언뜻 보기에 취약성은 힘과 능력의 부족인 것 같지만 취약성은 그 이상이라고 그는 말한다. Levinas 사상을 연구한 철학자 Jacques Derrida는 취약성은 열정과 고통에 상응하는 것이며, '비권력(non-power)'이기 때문에 더 이상 권력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고 말한다.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 없는 가능성, 불가능의 가능성이다."

그는 이처럼 취약성을 권력과 능력 담론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육성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특성이나 조건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선택되지 않은 것'과 '예측되지 않은 것', 즉 우리 능력 밖의 것에 대한 실존적 감수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취약성을 이해하자고

말한다. 그리고 이 근본적 곤경에 대한 유일한 답은 존중, 배려, 연민, 또는 Derrida가 말한 비권력의 가능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C. 긍정성

취약성은 자주 부정적인 함축성을 갖는 것으로 연상되었다. 취약하다는 것은 약함, 실패, 행동과 힘의 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극복해야 할 불행한 조건이다. 그러나 Ten Have는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은 취약성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근본적 조건으로서의 취약성은 선택과 의지의 영역 밖에 있다. 그것은 자율적 주체가 등장하기 전이다.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율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는 정상적 상황이다. 그는 수동성으로서 인류학적 취약성은 더 나아가 변화에 대한 개방성, 선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민감성, 즉 강철 인형(steel dolls)과 달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는 취약성은 결코 고정되거나 정태적인 것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잠재력(potentiality)을 가지고 있으며, 위해, 피해뿐만 아니라 변화와 변혁에도 개방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공동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취약성이 도덕적으로 낯선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메울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같은 곤경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Levinas가 인간이 취약하기 때문에, 즉 타인의 고통에 열려 있기 때문에 서로의 형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다.

그는 보호에 관한 언어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의 보편적 특징이기 때문에 취약성은 제거될 수 없지만 보완, 감소, 변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취약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적 관계는 우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약해지지 않는다면 사랑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취약성을 문제 삼는 것은 약용과 착취 가능성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다음으로 그는 현대 의학과 현대 문화의 일반적 문제는 계속해서 취약성의 공간을 줄이고 닫으려 한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가정된 도덕적 세계는 단순하다. 약하고 의존적이며 무력한 타인과 지속적으로 마주치는 강하고, 능력 있고, 독립적인 행위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지배적인 생명윤리담론의 주체는 공유된 취약성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의 취약성을 부정하고 이를 타인에게 위치시킨다. 생명윤리담론은 인간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이성적 주체의 결정을 강조한다. 인간성이 이질성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가능한 한 취약하지 않은 자율적 주체를 이상형으로 설정한다.

그는 인류학적 취약성을 인정하면 긍정적 대화가 가능하지만, 취약성을 부정하면 폭력, 지배, 억압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취약성과 규범성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⑤ 윤리적 원칙으로서 취약성

그는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의 규범적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한다. 취약성 개념으로부터 윤리적 원칙을 도출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인류학적 취약성의 윤리적 함의가 간단치 않다는 사실은 생명윤리학에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생명윤리학은 인간의 취약성 자체를 원칙으로 간주하지 않는 대신에 취약성에 대한 보호 또는 존중을 윤리적 원칙으로 삼는다.

Goodin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원칙은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Ten Have는 자신의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은 그보다 더 급진적 관점을 내포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취약한 타인들과 직면하여 도덕적 책임을 경험하는 자율적 주체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일축한다. 오히려 의존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처음부터 취약성 속에 있다. 즉, 타인들과 관계 맺고,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것은 노출되는 것, 따라서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를 즉시 윤리의 영역으로 인도한다.

그는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떠맡기보다는 책임과 의무에 저항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윤리 밖에 우리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타인들을 해칠 수 있지만 또한 그들에게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만남은 자신이 어떻게 그에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는 이것은 특히 그 관계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에서 폭력에 대해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Levinas의 급진적 관점에 따라, 자율적 주체는 취약하고 무방비 상태인 타인의 윤리적 요구를 통해서만 생겨난다고 말한다. 즉, 존재가 아니라 윤리가 첫 번째 철학인 것이다. 취약성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타인의 필요로 초점의 방향을 바꾸게 한다. 한편 Butler는 인류학적 취약성이 기본적으로 모호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규범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인간의 공유된 불확실성이 규범적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Ten Have는 인류학적 취약성은 무시될 수 없으며,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앞서 제기한 도덕적 의무는 어떻게 취약성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인류학적 조건이 우리를 윤리적으로 구속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공유된 특성으로서의 인류학적 취약성이 이미 그러한 도덕적 책임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취약성에 대한 윤리적 곤경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⑥ 철학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 연결하기

그는 인류학적 취약성은 인간이 이미 윤리의 영역 안에 있고 이것이 인간을 탄생시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취약성은 관계성과 의존성의 표현이다. 인류학적 취약성은 인간 존재가 항상 규범적 맥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동시에 취약성에 대한 윤리적 대응은 다를 수 있다. 비록 취약성이 우리가 모두 같은 곤경에 처해 있고 자기 이해관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만, 반응은 폭력에서 돌봄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일 수 있다.

그는 규범적 맥락의 모호성이 인류학적 취약성의 철학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인류학적 취약성이 중요하지만 취약성에 '차이의 배분'이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요한 필요들(needs)이 무시되거나 제한되면 취약성은 더 손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서로 다른 필요들에 초점을 맞추면 취약성의 보편적 차원과 맥락적 차원이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필수적 필요(vital need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똑같이 위해에 민감하다. 그는 이것이 인류학적 취약성의 철학적 관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부 필수적 필요는 지원 없이는 충족될 수 없는 주체의 상황에 의존적이다. 인정, 평등, 필요에 대한 강조는 인류학적 취약성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Levinas 철학이 무엇보다 타자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Levinas는 도덕적 의무는 내가 만나고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타자 앞에서 나는 모든 여성과 남성의 가상 존재를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Ten Have는 도덕적 의무는 보다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 간의 상호존중과 권리의 평등을 보여주기 위해 조직된 사회적 약정(arrangement)에 반영된다고 말한다.

그는 인류학적 취약성의 결과로 인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는 아마도 Fineman의 연구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Fineman이 볼 때 의존성이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집단적 책임이 발생된다. 따라서 더 넓은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개인과 가족의

책임만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Ten Have도 취약성은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는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이 취약성의 정치적 관점과 반대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논의를 마무리하며 그는 자신이 제안한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은 자율적 주체의 담론을 넘어서는 도덕적 관점을 제시한다고 명시한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관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면서, 존중, 돌봄, 연대, 책임의 도덕적 중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한다. 따라서 그는 취약성은 ‘자율성 부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광범위한 도덕적 비전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3) 취약성에 대한 정치적 관점과 특수 취약성³⁵

① 취약성에 대한 정치적 관점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 중 일부는 분명히 다른 이들보다 더 취약하다. 그는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으로 ‘공유된 취약성’이라는 생각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모든 개인이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 조건의 차이를 정당화하고 취약성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긴급성을 제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취약성은 권력의 불평등을 암시하며 정의와 인권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은 이러한 차이를 은폐한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사실상 두 관점 사이에 대립이 없으며, 오히려 정치적 관점은 철학적 관점에 기초함으로써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두 관점을 연결함으로써 취약성에 대한 주류 생명윤리적 접근법을 초월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② 특수 취약성과 사회 윤리

그는 인간의 일차적 취약성을 ‘인류학적 취약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차적 취약성을 ‘특수 취약성 (special vulnerability)’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유형의 취약성은 같은 개념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인류학적 취약성이 주로 민감성(감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특수 취약성은 노출과 적응 역량의 구성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수 취약성은 인류학적 취약성 때문에

³⁵ Ten Have, H. 2016. “Some of us are more vulnerable: Political perspectives on vulnerability”. in Ten Have, H. Vulnerability: Challenging bioethics. London: Routledge p.124~148.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그는 취약한 주체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생산되며 취약성은 이를 지탱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개입해야만 감소될 수 있다는 정치적 관점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인류학적 취약성과 특수 취약성 사이의 상호 연결은 이차원적인 것으로서, 보편과 특수라는 두 가지 수준에서의 피상적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 관련된 보다 복잡한 차원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는 인류학적 취약성은 ‘보편주의’ 수사를 생산하고 인간의 생명, 복지, 건강과 관련된 생명윤리의 보편적 담론을 이끌어내는 일반화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한편 특수 취약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모든 사람에 대한 잠재적인 위해가 이미 일부에서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특수 취약성은 관계와 상황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는 특수 취약성은 사회적 불평등 또는 권력배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특수 취약성에 대한 강조와 관련하여 정치적 관점은 취약성이 어떻게 악화되는지, 그리고 악화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취약성과 인권, 정의 이론, 글로벌 돌봄윤리 등을 연결하는 윤리적, 정치적 대응의 정식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취약성이 ‘개인윤리’가 아닌 ‘사회윤리(social ethics)’ 개념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취약성에 대해 개인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주류 생명윤리학과 경합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③ 상호작용과 협력

그는 인간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취약성은 분명히 병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성은 결코 고정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자율성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이며 따라서 동시에 항상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취약성이 자율성 문제를 극복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 촉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가 생각할 때 취약성에 저항하는 관점이 없다면 취약성 개념은 비참함과 숙명론만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저항이 유일한 또는 원칙적인 대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취약성과의 투쟁은 쉽게 ‘무취약성’을 만들 수 있다는 허구를 낳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의학은 지속 불가능해지고, 만성질환과 장애는 무의미해지며, 죽음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돼 버린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과 사회적 협력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한 관점은 인간을 이기적 존재라고 가정하는 가운데 인간 상태의 기본적 취약성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이성적 협력을 통해서만 개선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견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한다. 서로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자율적 주체의 자유로운 결정의 결과일 수 있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도 (인류학적, 특수) 두 가지 유형의 취약성이 고려될 수 있지만 둘 다 개별적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축소될 것이다. Hobbs의 자연상태가 가정하는 바와 같이 인간조건에 내재된 취약성은 자기보전을 위해 개인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취약성은 개별 행위자의 합리적 결정의 결과로 극복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요점은 취약성이 '개인의 관심사'로 국한된다는 데 있다. 즉, 타인으로부터 위협받고 있고 자발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취약성인 것이다.

그는 이와 정반대로 개인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이 된다고 가정하는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는 인간 존재는 주로 경쟁과 갈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Levinas, Butler와 같은 철학자들이 볼 때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는 항상 함께 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사람들 간 책임의 윤리적 관계가 자기 이해관계와 개인의 선택보다 우선한다고 믿는다. 자신과 타인의 근본적 연결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취약성은 결코 '개인의 관심사'일 수 없다. 취약성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고 개인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간성을 폐기하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는 이 후자의 관점을 지지하며 이에 따라 자신의 논의를 전개한다.

④ 특수 취약성의 사회적 맥락

그는 특수 취약성을 양산하는 사회적 맥락에 주의를 집중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으로 그는 전체 인구집단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맥락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결국 개인의 중요성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다. 이것은 결국 취약성에 대한 맥락적 접근이 개인의 자율성과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인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비판은 이러한 접근이 취약성을 양산하는 맥락들 가운데 개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들만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토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맥락적 접근은 이러한 '개인주의 에토스(ethos)'에 상반되는 급진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 접근에서 취약성은 **공통성(commonality)**과 **연대(solidarity)**를 의미한다.

그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간주할 때 집단과 공동체는 개인의 단순 집합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제도적 접근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수준에서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취약성 역시 마찬가지다. 특수 취약성이 체계적 수준에서 양산된다면 단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취약성 문제는 더 이상 생명윤리의 일반 원리로 해결할 수 있는 개별 사항이 아님을 역설하며, 정치적 관점을 진지하게 수용하고자 한다면 개별 행위자의 의사결정 영역을 넘어선 차원에 특수 취약성을 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특수 취약성을 양산하는 관계와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특수 취약성을 인류학적 취약성이 **악화된** 결과로 이해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 관점에서 특수 취약성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내의 권력 차이와 불평등의 결과이며,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의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양산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주체가 아니라 그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려면 개인의 자율성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폭력, 불평등, 권력의 언어를 통해 어떻게 특수 취약성이 생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예로, 그는 빈곤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던 의료인류학자 Paul Farmer를 언급한다. Farmer는 만약 사람들이 약을 구할 수 없어서 결핵과 같은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죽는다면, 비록 특정한 사람이 어떤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조적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의 경우 역시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면 구조적 폭력이 자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Farmer는 사람들의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에이즈와 결핵 등의 질병과 빈곤, 성별과 인종, 종족에 따른 차별과 박해 등을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폭력을 발생시키는 은폐된 메커니즘과 조건을 규명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했다.³⁶ Ten Have는 이러한 구조적 폭력의 기본 메커니즘을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라고 생각한다.

³⁶ 구조적 폭력은 폭력을 저지르는 직접적인 행위 주체가 없을 때 발생한다. 개인은 피해를 입거나 착취당할 수 있지만 폭력은 간접적이다. 그것은 ‘구조에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개별적 폭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은 대개 의도된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폭력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조적 폭력은 해로운 사회적 맥락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피해를 입지만 단지 개인의 경험으로 국한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

⑤ 취약성을 생산하는 불평등과 권력, 착취

구조적 폭력의 기본 메커니즘으로 사회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자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음을 주로 강조하게 된다. 그는 Johan Galtung이 구조적 폭력의 근본 메커니즘이 불평등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평등만으로 폭력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상기한다.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단지 자원의 더 평등한 분배만으로 구조적 폭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의사결정에 관한 영향력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권력의 차이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분배 불평등이 아닌 권력 격차가 특수 취약성을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 Iris Marion Young의 이론을 참고한다. Young은 사람들은 강력한 개인이나 특정 행위 때문이 아니라, 구별, 특권, 위계, 지위, 권한과 같은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일상적 실천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Young은 불평등한 권력 문제는 ‘착취(exploit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무력(powerlessness)’, ‘문화적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폭력(violence)’과 같은 ‘억압(oppression)’의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그는 Young의 이론에 따라, ‘권력의 자기이익 추구적 행사’로 착취를 정의하면서,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사람들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배제를 야기시키고 이로 인해 의존적이게 된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착취는 부정의와 부자유, 무시(disrespect), 그리고 취약성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사람들이 덜 취약해지도록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배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착취가 구조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개별 거래에 집중하면 부정의의 존재를 은폐하게 된다고 말한다. 어떤 고용주가 착취당하는 노동자를 도울 수 있지만, 그는 동시에 노동자를 착취하는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을 수 있다. 이때 문제는 선행을 베푸는 이가 너무 친절하고 인간적이라서 노동자들이 권력관계를 극복하고 착취적 시스템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데 있다. 그는 이러한 예는 구조적 착취(structural exploitation)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 간 불평등한 자원 분배에 집중하는 것보다 권력, 취약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자원의 보다 평등한 분배는 이러한 권력 차이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착취가 물론 거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평가와 접근은 두 차원을 포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그는 취약성에 대한 정치적 관점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의존적, 관계적이며, 연결되어 있다는 인류학적 취약성에 대한 기본 생각을 사회적 맥락에 대한 특정한 시각과 결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오늘날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접근법이 사회적 이익 또는 공적 이익을 개인 또는 개별 집단의 선호로 축소시키면서 취약성의 생산을 덜 보이게 만드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 접근법을 따르면 우리가 피해야 할 해악은 단지 자율적인 사람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 것만이 된다. 예를 들어 인도의 가난한 여성들이 돈이 필요해 자발적으로 대리모 계약을 한 경우 그 보상 수준이 적절하다면 그것은 착취적이지 않은 상호합의 사항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는 이처럼 개인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특정하게 편향된 정책, 제도를 특권화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구조적 착취로 인한 특수 취약성이 많은 경우 세계적 차원의 부정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개인들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러한 체계적 부정의에 대한 집단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세계화 시대에 취약성을 생산하고 악화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 차원에서 양산되는 특수 취약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취약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4)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취약성³⁷

① 세계화 현상으로서 취약성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으로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약성을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오히려 악화되어 왔다. 그는 세계화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의료민영화가 공공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와 그에 따른 의료접근성과 의료 질 악화를 유발한 사실을 그러한 예로 언급한다. 그는 세계화 과정은 권력의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그 주요한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취약성의 증가라고 생각한다.

세계화는 환경파괴와 지속적 빈곤, 폭력, 불평등, 인신매매, 착취, 소외, 차별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많은 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단지 세계화

³⁷ Ten Have, H. 2016. "Vulnerability is everywhere: Globalization and vulnerability". in Ten Have, H. Vulnerability: Challenging bioethics. London: Routledge p.149~166.

자체의 결과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진된 특정한 유형의 세계화의 결과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1980년대 이후 국제 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담론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취약성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고찰한다. 우리는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은 각자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 거래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사회복지조직과 공공기관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요구들(neoliberal claims)’, 그리고 바로 세계화가 불가피하다는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핵심 주장에 익숙하다.

인간을 ‘호모 이코노미크스(Homo economicus)’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취약성은 개별 주체가 가진 특정 결함이나 병리적 결과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볼 때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해독제는 개인의 의사결정능력과 임파워먼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취약한 주체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반영된다. 예컨대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약한 존재로 인식되기 쉽다. 이때 그들은 불행한 동료이기보다 그들의 상태를 개선할 기회를 잡지 않는 개인으로 여겨진다. 신자유주의는 가난을 단지 나쁜 선택의 결과일 뿐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는 신자유주의는 취약성이 개인 통제를 벗어난 상황의 결과임이 분명할 때라도 개인 책임과 행위주체성 (agency)을 해결책으로 삼는다고 말한다. 이때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수준에서 양산되는 취약성은 취약한 주체의 문제로 축소된다. 그 결과, 개별적 대응과 해결책만이 남게 된다. 동시에 이것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취약한 이들을 고립시킨다는 데 있다. 이들은 더 이상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한다. 그는 이같이 신자유주의적 ‘사회구조에 대한 거부’가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② 신자유주의에 의한 취약성 개념 무력화(Neutralizing)

그는 취약성을 개인의 결함으로 환원하는 신자유주의적 폐단에 깊이 우려하며, 취약성 담론이 부상하게 된 맥락에는 세계화 과정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취약계층 목록이 확대되는 현상을 이러한 과정과 정책에 대한 비판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 소비자와 자율적 의사결정자라는 지배적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즘이 취약한 주체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말한다. 취약성 담론이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즘을 ‘인간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취약성 개념이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즘에 대한 비판의 표현이 아니라, 세계화의 인간적 면모를 홍보하는 유용한 도구로 변모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오늘날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레토릭과 실제 결과 사이의 괴리가 분명해졌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보이지 않는 검열, 규율, 통제, 감시 메커니즘의 기술 구조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적 관료주의 경향이 생명과학의 새로운 영역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오늘날 생명공학 분야는 유전자 검사, 인간강화기술, ‘개인화된 의료’ 등을 통해 ‘합리적’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건강과 수명 연장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더 많은 개인 정보, 특히 유전자 정보를 요구한다. 질병 발생을 예측할 수 있고 개인 맞춤 치료법을 제공한다는 약속 이면에는 신체와 자신에 대한 유전자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그는 이러한 신기술의 약속은 다음 두 가지 가정에 토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건강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현대 유전학에 의해 제공되는 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로 간주된다. 인생은 끊임없는 유전자 데이터의 축적과 소유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계획”이 된다. 건강에 대한 가장 좋은 접근법은 자기관리이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율적 관리자로 여겨진다. 건강과 질병, 죽음은 우리의 생명자본에 대한 투자 결과이며, 이것은 또한 위험의 개인 전가를 의미한다.

두번째 가정은, 이제 도덕적 논쟁은 새로운 데이터, 장치에 대한 실용적 적용과 잠재적 사용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 유전학은 ‘투기적 자본주의(speculative capitalism)’와 같다고 일갈한다. 벤처 과학으로서 그것은 금융 세계에서 선물과 파생상품이 매출과 이익을 대체한 것처럼 구체적 상품보다는 희망과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의 대두가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관련된 이유다. 그는 생명공학의 혁신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는 이 두 가정의 결과로 의사결정의 사회적 맥락을 다루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생명공학의 유망한 비전은 미래가 항상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개인이 과학적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그 비전은 바이오뱅크에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모든 개인 데이터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어야 현실화될 수 있다. 사익과 공익의 경계가 허물어져야 약속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상적인 소비자 사회에서 건강 혜택과 상업적 혜택은 동의어가 되었다. 그는 유전자 기술로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감수성과 기질로 특징되는 생물학적 생명과 질병과 장애에 대처하는 사회와 공동체의 집단적 노력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정치적 생명 사이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그는 취약성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병폐를 개인화하기 위한 의도적 정책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조건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 취약한 개인을 돌보는 것은 부당한 조건에 적응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즉, 세계화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된 결과로 취약성을 이해하는 것은 애초 취약성을 생성하고 악화시키는 근본적 구조나 조건을 은폐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취약성은 생명윤리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었고, 취약성에 대한 초점은 세계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위험에 노출시키고 대응 능력을 줄어든게 만든 신자유주의 시장 정책에 맞춰져 있다고 말한다. 이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인간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취약성을 해결함에 있어서 현대 생명윤리는 모든 사람의 건강 요구를 해결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과학기술의 진보로부터 이득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취약성에 대한 우려는 불의한 구조와 정책으로 인해 위태로워지는 사람들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려는 인도주의적 관심과 노력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생명윤리담론이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즘과 동일한 기본 가정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취약성은 개별 의사결정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임파워먼트 강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한다. 취약성을 양산하는 문제적 조건이 제대로 분석되고 비판되지 않는 한 생명윤리는 제한적인 완화 방안만을 제공할 뿐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생명윤리 문헌에서 취약성은 제거되어야 하거나 최소한으로 감소되어야 하는 결함, 약점, 의존성 또는 불완전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을 꼬집는다. 자율적 행위자로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윤리적 원칙이라면 인간 조건의 취약성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취약성은 건설적인 행동과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도덕적 행위와 조화되기 어려운 수동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 분야에서 취약성의 긍정적 의미가 부각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취약성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해석들이 일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을 무시한 채 특수 취약성에만 집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취약성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갈한다. 그가 제시한 철학적, 정치적 관점 모두 취약성 개념을 주로 긍정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는 취약성에 대한 철학적 관점의 기본 개념으로서 인류학적 취약성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이기적인 개인의 합리적 결정을 통해 감소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부정적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리적 결정의 결과로 확립된 신자유주의적 사회, 정치 질서가 취약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는 취약성은 인간의 주체성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의 전제조건이 되며 따라서 제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윤리가 정치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윤리적 책임은 사회적 합의나 정치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들보다 우선한다. 이러한 관점은 또한 인류학적 취약성이 존중과 돌봄, 책임과 공감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류학적 취약성은 사회적 존재가 체현된 결과로서 공유된 조건이기 때문에 일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과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정치적 관점에서 특수 취약성은 원칙적으로 변경 가능하고 제거 가능한 것임을 상기한다. 그 자체가 인간 활동의 결과인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조건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대상 집단을 취약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구조적 폭력과 부정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취약성을 인식하고 분석하면 당사자들을 고정관념과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그는 취약성이라는 언어 자체는 보호, 감소, 제거라는 일반적 의미보다 더 긍정적인 담론을 생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 하다. 동시에 그는 취약성이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관련될 경우 보호 대응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대응들이 과도하게 온정주의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은 자율성이나 합리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다. 그는 취약성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해석에 따라 존엄성 존중,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적극적 행동으로서, 새로운 의미의 임파워먼트가 요청된다고 말한다.

한편 그는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는 연구자들조차 보호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한 예로, 본질적으로 취약한 모든 인간에 대한 평등한 보호와 민감한 개인에 대한 특별한 적극적 조치(예컨대 치료와 재활)라는 두 가지 보호 레짐을 제시한 논의를 언급한다.³⁸ 그가 볼 때 이 논의의 언어는 여전히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한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보호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따라서 다른 유형의 개입을 요구하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조건의 결과로 취약성을 해석하기보다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그는 취약성이 제거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윤리적 원칙으로서 취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존중과 함께 우리는 특수 취약성을 극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윤리적 원칙으로서 취약성을 존중하는 것은 연대, 책임, 상호 지원 등을 장려하는

³⁸ Kottow, MH. 2004. "Vulnerability: What kind of principle is it?"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7:281-287

다양한 기회를 열어준다. 또한 그는 이러한 존중은 인간 조건에 내재된 취약성이 사회 부정의와 불평등 증가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 기존 보호 레짐보다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5) 인권, 정의, 역량, 글로벌 돌봄³⁹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취약하다. 관계성은 왜 인간의 취약성이 자율성 실패의 결과가 아닌 자율성의 조건인지 설명한다. 인간은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조건에 의존한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은 인류학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일부 개인과 집단이 더 취약하다. 취약성은 위협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고 적응 능력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결정요인의 영향을 받아 악화될 수 있다. 특수 취약성은 특정 개인과 집단에 대한 취약성의 발생을 검토하는 정치적 관점의 대상이다. Ten Have는 취약성을 인류학적 현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체에 대한 일차적 초점에서 벗어나 이론적 틀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생명윤리가 더 넓은 이론적 틀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이론적 접근법으로 인권, 사회정의, 역량, 글로벌 돌봄 윤리를 제시한다.

① 인권 (Human rights)

취약성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권의 기본이 된다. 인류학적 취약성과 인권의 연관성은 Bryan Turner에 의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Turner에 따르면, 취약성은 인권의 출현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 목적도 설명한다. 그것은 바로 ‘자연 복권(natural lottery)’에 따른 불평등을 보상하는 것이다.⁴⁰

Ten Have는 인권은 사람들의 취약함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 제도를 만드는 데 필수적 요소라고 말한다. 사회 제도들은 인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맥락이 끊임없이

³⁹ Ten Have, H. 2016. “Theoretical Implications of Vulnerability”. in Ten Have, H. Vulnerability: Challenging bioethics . London: Routledge p.167~206.

⁴⁰ Turner, B.S. 2006. Vulnerability and Human Rights. University Park: Penn State University Press.

변화하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회 제도들은 안정적이거나 정태적이지 않다. 그는 이러한 맥락의 ‘불안정성’이 특수 취약성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인권은 개별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인간의 번영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을 보호함으로써 특수 취약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취약성은 인권의 기원과 보편성, 목적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Turner의 이론은 의학적, 기술적 진보가 인류학적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전세계 사회문화적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특수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비판 받아 왔다. 이렇게 취약성이 감소된다면 미래에는 인권과의 관련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Turner가 인류학적 취약성이 인간의 구성 요소임을 정확히 밝혔기 때문에 이 비판은 포스트휴먼 세계에만 타당한 것이 될 것이라고 논박한다.

국제 인권 담론은 특히 1990년대 이후 의학과 보건 분야에서 확대되었다. 이 일에 선구적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 Jonathan Mann은 건강과 인권이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취약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HIV/AIDS 예방 전략의 초점을 개인의 위험 감소 측면에서 사회적, 환경적 결정요인 측면으로 이동시켰다. Ten Have는 인권의 개념적 틀은 ‘HIV 감염인의 취약성의 사회적 근본 원인’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틀은 취약한 사람들의 특정 상황에서의 공통점을 설명하는 어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A. 인권과 생명윤리

그는 인권은 취약성뿐만 아니라 생명윤리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인권을 생명윤리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 외에도 인권 자체를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인권은 다른 원칙들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궁극적 권위이자 최종적 제약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원칙은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는 인권 담론은 세계화 맥락에서 특히 적절해 보이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많은 생명윤리적 이슈와 문제들이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인권은 그것들을 분석하고 다루는데 필요한 보편적 틀로 활용되고 있다. 인권은 전세계의 수많은 개인, 단체, 기관들 가운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는 인권 담론이 두 가지 이유로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인권의 언어가 인간의 평등한 가치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인권 기반 접근법은 특히 불평등, 권력 격차, 주변화, 차별적 관행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 접근법은 취약계층의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가장 불리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는 Michael Ignatieff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인용한다.

“인권이 세계화된 것은 그것이 권력자의 이익에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로 힘없는 사람들의 이익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⁴¹

또 다른 이유는 인권이 (특히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음용 가능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 위생, 주거, 의료, 의약품 접근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취약성의 생성은 인권 존중의 결여와 관련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 관점은 Farmer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시되었다. Farmer에게 의료 분야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형평성의 증진을 의미하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B. 인권의 범위

Ten Have는 인권 담론은 광범위한 실천을 창출한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인권 접근법은 단지 보호뿐만 아니라 권리의 증진과 이행에 중점을 둔다. 또 의료는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장려되어야 할 공공재로 여겨진다. 그는 인권 담론은 학문적 연구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입법이나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규범적인 실천을 고무시킨다. 물론 그는 이것이 인권에 대한 법적인 이해 이상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것이 바로 Sen과 같은 학자가 주장했듯이, “인권은 윤리적 권리다(human rights are ethical rights)”라는 접근이다. 그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들을 포괄하면서 정책 개발과 시행에도 초점을 맞춘다. 또 시민사회 조직과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지지(advocacy)를 나타낸다.

그러나 Ten Have는 인권 담론이 동시에 많은 이론적, 실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인권이 자주 ‘**개인의 권리**’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인권 담론이 주로 개인 자유의 도구로 여겨진다는 비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자는 특히 미국식 원칙주의가 인권을 개인의 소극적 권리로 간주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⁴¹ Ignatieff, M. 2001. Human rights as politics and idolat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7.

이에 대해 그는 이것이 ‘진화’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인권 전통은 계속 발전해 왔고 그 결과 오늘날 이중적 초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인권을 개인의 권리로 보는 개인주의적 관점과 공동의 복지를 위해 행동할 의무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적 관점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 분야에서도 처음에는 개인의 권리, 특히 환자 권리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 관심이 사회적 조건 개선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문제 측면으로 옮겨가면서, 사회적, 경제적 인권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것이 건강권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조약인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에 대한 설명과 해석,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권리는 의료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건강의 기본 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 권리로 해석되며, 핵심 의무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인권 담론의 초점은 취약계층에 있다. 이는 가장 취약한 집단의 상황을 다루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권리는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에게 비차별적 기준으로 보건의료 시설,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로 해석된다. 따라서 인권 담론은 일반적으로 (폭력 및 고문으로부터) 신체적 보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교육, 건강, 음식, 일, 주거) 충족과 성별, 민족, 문화의 차이를 수용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이러한 인권의 비교적 새로운 강조는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이 개념은 인간의 개별적 특성보다는 인류와 관련된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인권의 기원에 자리하고 있다. 공유된 곤경 속에 있는 인간은 단지 개별적인 소비자 또는 권리 소유자가 아니다. 서로 의존적이며 관계적이기 때문에 연대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1981년 반줄(감비아 수도)에서 채택된 아프리카 인권 헌장에서 인권 담론에 관한 **연대**의 의미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여긴다.⁴² 이 헌장은 인간이 개인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음을 선언한다. Alain Supiot는 다양한 아프리카 언어에서 ‘가난(poor)’이라는 단어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즉 다른 사람들과의 결속력에 기대기 어려운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아프리카 문화에서 중요한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연대 개념은 유럽 연합의 기본권 헌장에도 포함되었다.

⁴²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Banjul, 1981 (<http://www1.umn.edu/humanrts/instree/z1afchar.htm>)

이어서 그는 생명윤리 분야에서 인권 담론이 부딪히는 두 번째 도전은 인권과 생명윤리의 관계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한다. 상당한 이론적, 실천적, 제도적 차이가 이 관계를 ‘문제’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두 담론 사이의 상호작용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임을 상기한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보완적 담론이 탄생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쪽으로 흡수, 통합될 것인지, 즉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서 더 많은 연구와 고찰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는 Ashcroft의 논의를 소개한다. Ashcroft는 정부, 의료체계, 연구소, 제약회사, 대학 등에서 생명윤리가 인권 언어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의 낮은 ‘이념적 열기(ideological temperature)’와 사회 운동(social movement)의 위험 가능성 부재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생명윤리는 인권 담론에 비해 덜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Ten Have는 Ashcroft의 비판적 진단에 동의하며 이 문제에 대한 더 심층적 탐구의 필요성과 함께 도덕적 분석과 사회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과학적 탐구와 활동가 신념이 반드시 반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생명윤리담론이 더 이론적이 되더라도 도덕적 분석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촉진되는 현재의 지배적 가치 대신에 대안적 비전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취약성 개념을 진지하게 고찰하고 그것을 ‘실패한 자율성’으로 축소하지 않을 때 생명윤리 담론은 건강과 의료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즘의 영향에 대항하기 위한 통찰과 이상을 사회에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인권 담론이 생명윤리에 필요한 이론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생명윤리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윤리적 개념을 강조하면서 개인에 대한 집중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이동할 수 있을 때 취약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② 사회 정의(Social Justice)

A. 정의 관점의 필요성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은 사회 부정의가 구조적 폭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는 학자들에 의해 비판 받는다. 인권은 평등한 규범을 제공하지만, 구조적 차원보다는 개인적 차원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인권은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인권은 자원 분배를 말하는 것이지, 자원 분배에 관한 권력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인권 담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고려할 때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취약성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특히 글로벌사우스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생명윤리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대신에 개인을 취약하게 만드는 부정의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명윤리가 취약성과 정의의 관점을 연관시킬 수 있도록 이끈다.

그는 취약성과 관련하여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첫번째 주장은, 오늘날 건강이 사회적 조건과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더 자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은 많은 사람들을 질병, 장애, 고통에 취약하게 만든다. 건강에 대한 폭넓은 인식은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을 고려하도록 하는 포괄적 정의의 개념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의료에서 정의에 대한 논의는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의료 접근과 자원 분배 문제에 집중된다. 그러나 그는 정의는 의료 수요의 종점(end point)에 집중하는 대신, 그러한 요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취약성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는 한 보건의료자원의 보다 균등한 분배 또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장은 세계화와 관련이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민간의료 분야에 혜택을 준 반면 공공의료서비스는 취약해지고 접근성이 떨어뜨리도록 만들었다. 그는 세계화의 편익과 부담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그 결과가 광범위한 취약성을 생산하는 글로벌 부정의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수 취약성은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와 세계 전체에 존재하는 권력 차이의 결과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차원에서 온전히 다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 정의에 초점을 맞추는 세 번째 주장은 취약성에 대한 정치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 취약하다는 것은 공정한 이익 분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특히 의료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연구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더 쉽다. 그는 취약성을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즘에 의해 생성된 착취적 질서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관심을 더 집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단지 이익과 불이익의 불공평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무력한(powerless) 범주로 구별하는 사회적 틀에 관한 것이다.

B. 사회정의의 문제점

그는 취약성에 대한 현재 논쟁에서 사회 정의의 개념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 정의의 범위가 국내적이다. 그는 사회 정의가 주로 민족국가(nation-state)의 맥락 안에서만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회’는 오직 민족국가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 차원에서의 정치공동체는 세계 차원에 존재하지 않는 사회 정의에 필요한 구체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긴 하다.

그는 이러한 정의관은 자원과 존중의 측면에서 시민들이 서로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 사회 조건이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 환경에서의 사회 정의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는 이 관점에서는 민족국가의 영역만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정의는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글로벌 정의 추구는 정의가 무엇인지 규정할 수 있는 권력 주체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그는 취약성이 주로 권력의 차이와 관련돼 있다면 단지 글로벌 차원에서 정의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특별한 글로벌 취약성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사회 정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두 번째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사회’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유럽의 산업혁명 시기에 자유방임적 자유주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 정의’라는 용어가 18세기 후반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국가의 제도적 불안을 해소하고 자원을 재분배할 수 있는 공동체 영역으로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는 과거 이러한 사회 정의의 강조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을 사회적 존재로, 그리고 국가를 사회적 권리의 보호자이자 사회 보장의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사회 정의의 맥락을 크게 전환시켰다. 오늘날 국가는 시장 논리를 따르며, 무엇이 정의로운지, 무엇이 옳은지 보다는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향성은 일상 생활에 더욱 널리 퍼져 있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사회 자체가 경제적 용어로 재정의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시민들은 소비자나 고객이 되었고, 사회적 차이는 합리적 행위자들의 개별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된다. 오늘날 사회 정의는 개인의 노력과 책임에 기초하여 자원이 배분될 것을 요구한다. 그는 실존적 불안정성과 보편화된 취약성의 신자유주의적 맥락 안에서, 사회 정의의 언어로는 더 이상 체계적인 불이익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과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C. 사회 정의의 범위

따라서 그는 사회 정의라는 이론적 담론으로 취약성을 분석하려면 이러한 사회 정의의 범위와 관련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 사회 정의의 범위가 더 이상 국가 영토의 경계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개인과 집단에

불리한 사회적 과정이 국가 경계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경험적 현실은 제한적 정의 개념을 점점 더 쓸모없게 만들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내와 국제 제도질서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그는 세계 시민권, 세계 도덕 공동체, 세계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상을 옹호하는 다양한 형태의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논의들을 상기한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하나의 ‘도덕 공동체’에 살고 있으며 세계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공유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국가 경계는 별다른 도덕적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그는 “우리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세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 윤리적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철학자 Peter Singer의 주장을 인용한다.

⁴³ Singer는 더 큰 글로벌 거버넌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제도/기구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Ten Have는 우리는 전세계 취약한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그리고 이는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의에 따른 의무임을 강조한다.

D. 사회 정의의 관련성(Relevance)

그는 사회 정의가 세계화 문제와 관련성이 없다는 비판은 사회 정의 개념을 재해석하려는 노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관련성 문제는 사회 정의가 분배적 정의와 호환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사회 정의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이익과 손해의 도덕적으로 적절한 분배”라는 의미로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한 Iris Young의 지적에 동의한다. 즉 현재 패러다임에서 사회 정의의 강조점은 물질적, 비물질적 재화의 배분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취약성에 사회 정의를 적용하고자 할 때, 취약성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불평등이 표출된 결과라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권력자가 취약성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방법과 물질적 재화 뿐 아니라 권력 역시 균형을 맞추어서 사람들이 덜 취약해지도록 만드는 재분배 방법이 그것이다.

그는 (Young에 의해 이미 규명된) ‘분배 패러다임’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하나는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배경 조건이 무시된다는 점이다. 이는 분배 정의가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종점(endpoint)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의 비판이다. 또한, 분배 패러다임은 시민을 상품의

⁴³ Singer, P. 2004. One world: The ethics of globalization(Second Edi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13, 173.

소비자로 간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사회적 원자주의(social atomism)’를 가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제도적 맥락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분배 패러다임은 정의 이슈를 개인의 선호와 자산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이 비판의 요점이다. 이 두 가지 문제의 핵심은 사회 정의가 분배 과정에서 작동하는 체계적 제약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정의 담론이 개별 주체와 재화 분배의 수준을 넘어서야 취약성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연금이 줄고 돌봄이 사유화되고 의료 접근성이 악화된 까닭에 취약성이 심화된 노인들의 경우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정의 담론의 확장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 경제 위기로 일자리와 집을 잃고 현재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Bauman이 다음과 같이 적절히 표현했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선택의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선택자가 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⁴⁴

E. 정의 개념의 확장

그는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자원 분배 또는 재분배만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하면서, 취약한 주체를 만들어내는 조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는 정의 개념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특히 취약한 주체가 의사결정절차와 권력에서 배제되는 방식을 비판한 Young의 주장처럼, 사실 취약한 이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억압적 조건 (“지배의 구조적 현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회 정의가 이러한 조건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부당한 사회 구조와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억압과 지배의 지속, 따라서 구조적 부정의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정의 담론을 활용하여 취약성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면,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그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 이상의 것, 즉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 조건을 결정하는 권력 격차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의는 취약성을 생성하는 구조를 교정함으로써 취약성을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취약성이 사회적 불평등의 증상이라면 정의는 이용가능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 이상을 의미해야 한다. 그는 글로벌 정의로서의 사회 정의의 보다 넓은 개념은 취약성 해결과 관련하여 의무와 책임, 제도 구축, 대표, 역량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⁴⁴ Bauman, Z. 1998. Globalization. The human consequenc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86.

먼저 의무(obligations) 접근이란, 전세계에 발생하는 취약성 문제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관점이다. 그는 이러한 관점의 예로, 취약성을 사람들이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Goodin의 주장을 제시한다. Thomas Pogge의 세계시민주의적 관점 역시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취약성 문제를 시정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또 다른 접근법은 책임(responsibilities)을 강조하는 것이다. 구조적 불의의 결과로서 취약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식별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개인의 책임 모델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Young은 ‘사회적 연결 모델(social connection model)’을 제시한 바 있다. Ten Have는 이 사회적 연결 모델이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에 기초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인간은 항상 다른 인간과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부당한 구조적 조건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데 관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발생한 위해가 사람들을 해치고 있지만 비난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Young은 이러한 종류의 책임은 집단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람들이 협조해야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Ten Have는 정치적 책임은 의무를 강조하는 입장보다 더 포괄적이지만 동시에 더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적 배치가 구조적 부정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소비와 같은 모든 유형의 사회적 과정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권한이나 영향력, 특권과 이익 등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의무 접근보다 제약이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세 번째 접근법으로 글로벌 정의를 위한 국제 기구와 같은 제도 구축(Institution-building)을 강조한다. 정의가 더 이상 국가 단위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국제 기구가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제도적 세계시민주의(institutional cosmopolitanism)’로 불리는 관점으로, 세계 정부를 건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이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 기구를 만들자는 입장을 취한다. 글로벌 정의를 위한 국제 기구는 취약계층의 역량을 지원하고 권력자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는 정의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은 ‘대표(Representation)’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현실에서 취약한 이들은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국제적 공론장에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배제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Nancy Fraser는 이 대표성(정치적

차원)을 분배(경제적 차원), 인정(문화적 차원)과 함께 정의의 삼차원적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였다.⁴⁵ 이 정치적 차원은 사회 생활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배치에 누가 포함되는지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화된 질서 속에서 특히 중요하다.

사회 정의가 국가 경계에 국한된다면 취약성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부정의를 해결할 수 없다. 취약성을 발생시키고 강화하는 글로벌 세력이 정의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틀을 재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Ten Have는 단순히 취약한 이들이 공론화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만이 문제인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 문제는 더 깊다. 사회경제적 규칙을 정하는 것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취약성을 양산하는 힘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도 없다. 이 프레임에서 취약계층의 정의 주장은 분배와 인정의 관점에서만 다뤄질 뿐이다. 그는 사회생활에 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존 프레임을 해체하고 그 경계를 다시 긋는 것은 ‘잘못된 대표성(misrepresentation)’의 부정의를 바로잡고 취약계층의 ‘정치적 무성(political voicelessness)’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의 목적임을 확인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먼저 그는 사회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더 이상 개별국가에 국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는 이제 글로벌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로벌 정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일반적 가정을 비판하는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 글로벌 정의는 또한 취약한 대상자를 보호하거나 자율성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는 취약성의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그는 이 넓은 정의 개념의 구체적인 함축은 다를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무, 책임, 국제 기구의 건설 또는 취약계층의 대표 문제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역량(Capabilities)

그는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정의의 다른 한 가지 접근법으로 역량 이론에 주목한다. 역량 접근(capabilities approach)을 처음 고안한 인물은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Amartya Sen이다. 그는 발전과 정의는 부, 소득, 자원과 같은 경제적 자원 측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자원은 좋은 삶을 위한 기회의 수단일 뿐이다. 그는 발전(development)에 대한 더 나은 이해는 인간의 번영을 자유,

⁴⁵ Fraser, N. 2010.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역량과 연관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기능(functionings, 실제 성취)’과 ‘역량(capabilities,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성취할 자유 또는 기회)’을 엄격히 구분한다. 그에게 역량은 기능보다 중요한 것이다. 역량은 기능할 수 있는 기회이며 선택의 자유를 반영한다. 기능과 역량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Sen은 굶주린 사람과 단식 중인 사람의 차이를 예로 든다. 둘 다 배고프다는 점에서 기능은 같다. 하지만 굶주린 사람은 먹을 역량이 없다. 그의 기능은 단식하는 사람과 같은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Sen의 역량 접근은 생계 수단으로부터 삶의 실제 기회들로 초점을 전환한다. 인간의 번영은 소득, 만족, 행복과 같지 않다. 그에게 발전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간 역량의 확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들이 가진 수단으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즉, 역량 접근에서 핵심 질문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어진 재화를 성취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은 저마다 다양할 뿐 아니라, 필요와 가치 역시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자원의 이용가능성은 웰빙을 위해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

Sen의 역량 접근은 정치철학자 Martha Nussbaum에 의해 확장된다. 인간 역량의 확장이라는 발전의 새로운 관점은 경제 발전의 영역을 넘어 정의의 일반 이론과 인간의 번영에 대한 Nussbaum의 많은 글들에서 정교하게 논의되었다. 그는 선하고 정의로운 사회인지 여부는 역량의 분배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며, 삶의 질은 사람들의 실제 기능보다 기능할 수 있는 기회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그는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은 삶’을 보장하는 최소 수준의 역량이 존재하고, 일부 특정한 역량들은 보편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 역량들(basic capabilities)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그는 교육, 건강, 영양, 문해력 등 인간 역량의 핵심 목록을 제안하기도 했다.⁴⁶

A. 역량과 취약성

Ten Have는 역량 접근법은 인간 개발 연구의 범위를 넘어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적용 사례 중 일부에서는 취약성 개념과 명시적 연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접근법은 예를 들어 취약한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나 노인 집단에 대한 논의에 적용되고 있다. 이 접근이 가지는 중요한 장점은

⁴⁶ Sen은 그러한 역량의 목록을 만들지 않았다. 역량의 적절성은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Nussbaum이 제안한 역량 목록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그것이 사람들의 민주적 참여와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만들어졌다는 점으로, 이 점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노인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취약한 주체로 보기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역량 접근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역량을 증진하는 것은 노인을 주체로 간주하고 취약점 대신 능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Ten Have는 정의 이론은 능력의 평등을 가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사회적 협력이 상호 이익과 상호불평등에 기초한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협력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역량 이론가 Nussbaum은 대부분의 인간이 필요, 의존성, 장애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정의 이론가들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앞서 Ten Have가 인류학적 취약성이라고 불렀던 특성이다.

따라서 Nussbaum은 역량 접근이 자유주의적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진 ‘수정된 자유주의’라고 설명한다. 역량 접근이 인간을 본질적으로 협력적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Ten Have는 이러한 관점을 참고하여, 장애인의 역량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호요양, 특수교육, 공적 공간의 재설계와 같은) 일반적 사회 제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도입하는 식의 사회적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그는 비록 우리의 노력이 일부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든 핵심 역량들(central capabilities)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Nussbaum의 주장에 동의한다.

한편 Ten Have는 역량 접근에서 취약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분명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Sen의 저서에서 취약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가 비교적 드문 편인데, 그 중 하나는 자유의 본질적 역할과 도구적 역할에 관한 논의에서다. Sen은 자유를 발전의 목표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대목에서는 자유를 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Sen은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다섯 가지 유형의 자유로, ‘정치적 자유’, ‘경제적 편의’, ‘사회적 기회’, ‘투명성 보장’, ‘안전 보장’을 제시한다. 이 중 마지막 유형인 안전 보장은 “취약성” 직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Ten Have는 이러한 다섯 가지 도구적 자유들 각각에 대한 박탈이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있지만 이론적 설명의 정교함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저서에서 Sen은 자원을 좋은 삶을 위한 기회로 전환하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박탈감의 네 가지 원천으로 ‘개인적 이질성’, ‘물리적 환경의 다양성’, ‘사회적 환경의 변화’, ‘관계적 관점의 차이’를 제시한다. 이러한 원천들은 한편으로는 나이, 성별, 장애와 같은 내적 특성들과 결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들과 결합한다. Sen은 이를 통해 왜 역량이 제한되는지 설명한다. Sen의

분석은 가난과 장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Ten Have는 이러한 Sen의 설명을 취약성 측면에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 역량의 제한으로서 취약성

Ten Have는 역량 관련 문헌에서 ‘취약성’ 개념이 언급된 몇 가지 대목에 주목한다. Nussbaum은 인간을 ‘역량과 필요를 함께 지닌, 취약한 일시적 생명체(vulnerable temporal creatures, both capable and needy)’로 이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를 옹호한다. 역량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면, 취약성은 주로 그러한 기회의 제한, 즉 제한된 자유를 의미한다. Nussbaum에게 인간의 역량은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 힘’이며, Sen에 따르면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런데 Ten Have는 두 경우 모두 힘은 명백히 **개인**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해석을 취약성 개념에 적용한다면 주류 생명윤리담론에서 제공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우려와 달리 역량 이론 자체는 분명히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취약성을 역량의 한계로 간주하면 중요한 개념 이동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취약한 피험자는 취약하지 않은 피험자와 동일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실제 피해를 입는 경우에만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두 사람의 주된 차이는 할 수 있는 기회에 있다.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회는 개인의 특성이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조건 때문에 제한된다. 그러므로 취약하다는 것은 어떤 존재적 상태를 달성하거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약성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Nussbaum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유형의 역량 간 구별과 연결된다. 기본 기능의 실패를 내재된 취약성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고 Ten Have는 생각한다. Nussbaum의 유형학에서 ‘결합된 역량(combined capabilities)’은 주로 외부 조건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것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내부 역량의 개발 뿐 아니라 적절한 환경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특정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경우 특수 취약성이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Nussbaum이 나열한 핵심 역량들의 실패와 관련지어 취약성을 설명하는 것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는 역량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취약성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존엄한 존재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역량은 노숙자들에게 자주 제한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여러 역량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합된 역량’ 개념처럼 역량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 각자 다른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역량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기회로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떤 하나의 핵심 역량을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서로 대체될 수 없다. 따라서 취약성은 어떤 특정 역량만을 국한하여 분석할 수 없다. 다만 역량 접근은 특정 역량들을 확장해 가는 방법의 분석을 제시한다. 예컨대 자원이나 재화를 역량으로 변환하는 어려움이나 특정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와 같이 역량을 제약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Ten Have는 역량 제약으로 취약성을 해석하면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특정한 교정조치(remediation)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설명한다.

C. 역량의 구조적 제약요인

그는 역량 이론에서 확인한 또 다른 특징으로, 관련 역량들이 단순한 개별적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한다. 그것들은 내부 조건과 외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 행위자뿐만 아니라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Sen도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사회적 산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Ten Have는 개인주의적 접근법은 역량 부족이 위협에 대한 불평등한 노출을 생성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은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감소, 제한, 박탈한다. 따라서 역량 접근법은 개인의 적응 능력뿐만 아니라 집단적 취약성을 만들거나 악화시키는 노출, 민감성 요소에도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취약성이 역량의 제약으로 간주되어 선택 기회의 한계로 해석되더라도, 내적 역량의 약화만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외부 조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는 각 역량은 시장과 정치 권력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아울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적 맥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량은 상호 연결될 뿐만 아니라 역량을 강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건에도 의존적이다.

D. 역량의 사회성 (Sociality)

다음으로 그는 역량 접근이 개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역량을 각자 성취할 수 있는 자유로만 이해할 경우 권력의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기 어렵게 된다는 비판이다. 그러한 예로 Sen의 최근 정의에 관한 작업은 권력 역학의 측면을 설명하거나 제약 산업과 같은 초국가적 기업의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⁴⁷ Vicente Navarro는 Sen 이 자유를 강조함에 있어서 발전의 정치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⁴⁸

개인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개인의 역량을 만들고 유지하는 사회적 맥락과 구조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Ten Have는 역량 접근이 “개인의 자유를 인간 삶의 궁극적 가치로 삼는” 것이 주요 약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비판은 인간의 사회적 속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앞서 논의했던 취약성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과 생명윤리담론 내에서의 개인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비판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취약성이 개인의 역량 제약으로만 간주되는 경우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과 능력이 집단 또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Frances Stewart는 집단 형성과 연합이 권력의 원천이면서 개인 역량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에서 ‘**집단 역량(group capabilities)**’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⁹ 사람들이 공유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협력하기 때문에 역량의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볼 때 역량은 그 자체로 집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개인이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 결과일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⁵⁰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Ten Have는 역량 접근은 단순히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며 이는 취약성을 해석하는 유의미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 역량 접근을 옹호한다. 그러면서도 그도 역시 역량 이론 내부적으로 이러한 비판을 용이하게 만드는 애매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는 Nussbaum의 논의를 그 예로 가져온다. 사회 조건의 역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Nussbaum은 사회적, 정치적 상황의

⁴⁷ Deneulin, S. & McGregor, J. A. 2010. “The capability approach and the politics of a social conception of wellbe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3(4):501~519.

⁴⁸ Navarro, V.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A critique of Amartya’s Sen’s Development as freedom”. In Vicente Navarro (ed.).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inequalities. Consequences for health and quality of life*. New York: Baywood Publishing Company. 2002: 461~474.

⁴⁹ Stewart, F. 2005. “Groups and capabiliti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2):185~204.

⁵⁰ Hartley Dean은 역량 접근에서 우선순위는 사회적 연대가 아닌 개인의 자유(liberty)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역량 접근의 기본 가정은 인간은 서로 의존하지 않으며 공적 공간에서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개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인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는 자율적 사람이며, 사회적 구조는 개인의 역량들을 활성화하거나 제약할 수 있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Dean, H. 2009. “Critiquing capabilities: The distractions of a beguiling concept”. *Critical Social Policy*. 29(2):261~273)

불평등이 특히 빈곤, 폭력, 차별에 직면한 여성들에게 어떻게 역량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준다. Nussbaum은 또한 개인은 혼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형성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호혜” 속에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사회적 차원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목표는 인간 역량의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들은 각 능력이 ‘문턱 수준(threshold levels)’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Nussbaum은 궁극적으로 각 개인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정치적 목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적 맥락은 이 목표보다 부차적인 것이 된다. 그에게 맥락은 내부 역량의 훈련과 개별 주체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사회 제도들은 가치 있는 행위를 성취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Ten Have는 역량 접근법에 따른 정책 목표가 부, 소득, 물질적 자원보다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축소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Ten Have는 Sen의 작업 역시 비슷한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서도 사회 제도들은 개인의 자유 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고려되는 측면이 강하다. Sen은 기회는 “어떤 제도가 존재하고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Ten Have는 자유가 행사되는 역사와 공동체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맥락에 대한 그의 인식이 희미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Sen에게 있어서 강화가 필요한 것은 개인의 역량이다. 그래서 그는 Sen의 철학을 ‘행위자 지향적’이라고 부른다. Sen은 “적절한 사회적 기회가 있다면, 개인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고 서로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Ten Have는 비록 Sen이 공적 이성에 많은 신뢰를 두고 있지만, 구조적 불평등과 부정의의 맥락 안에서, 특히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여지가 거의 없을 때 취약한 이들이 특정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Sen 역시 시장 기전의 방해 효과에 대해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한 적이 있다.

E. 역량 접근의 장점

Ten Have는 역량 접근 방식의 관점을 따라 취약성을 해석하고 정교하게 설명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장점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첫째, 물질적 자원이나 상품 대신에 ‘사람’에게 중점을 둘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책 결정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프레임에 대한 중요한 교정을 의미한다. 역량 이론에 따르면 취약성은 사람들의 실제 행동이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둘째, 역량 접근은 활동적 행위자로서 사람들의 임파워먼트를 장려한다. 이에 따라 취약한 사람들도 역시 수동적 보호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접근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역량 접근은 어떤 역량이 향상될 필요가 있는지는 공적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것은 역량의 중요성이 목적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황 의존적인 특수 취약성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다.

넷째, 역량 접근은 실질적 관심을 **외부 조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간이 번영할 수 있는 외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의 핵심적 역량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와 법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역량 접근에 따르면 취약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보호가 아니라 기회의 제공이 된다고 말한다. 역량 접근이 자유를 적극적 자유로 이해하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주로 소극적 자유와 관련이 있는 반면, 역량 접근은 기회의 창출을 통한 사람들의 역량 증진,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따라 행동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한다. 단지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자유는 정부의 적극적 조치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F. 도전 과제

역량 접근은 1990년 이후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사회 정책, 경제, 개발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전세계 빈곤과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Nussbaum이 주장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본 정의의 문제로서 삶의 핵심적인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며, 역량의 확장은 제공되는 기회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해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Ten Have는 역량 접근이 최소 수준의 핵심적 역량을 확보하는 법적, 정치적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생명윤리학에서 역량 접근법과 취약성 개념 사이에 체계적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Sen은 건강(성취도)과 건강해질 수 있는 역량을 구분한다.⁵¹ 건강할 수 있는 역량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건강, 웰빙, 기대 수명을 결정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역량 접근에 따르면 건강 정의는 보건의료제도 그 이상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Nussbaum 역시 건강할 수 있는 역량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기본 권리를 나타내며, 모든 인간의 정치적, 도덕적 자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맥락을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과제는 개인의 건강할 수 있는 역량을 제약하는 물질적,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Ten Have는 역량 접근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사회적 조치를 좁게 정의한 가운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고 보건의료정책만으로 제한을 두려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광범위한 ‘비-건강정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이론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그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 야기되는 부정의를 보건의료정책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관점은 건강 정의를 개인의 건강 역량으로 국한시킬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Sen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다. Sen의 역량 접근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특정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취를 실현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그에 따른 결과는 당사자 개인의 책임이 된다. 이렇게 역량 접근에서의 역량과 기능의 구별은 사회와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나눈다. 이와 관련하여 Sen은 의료서비스 보장을 예로 제시한다. 정부가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그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만큼 심각한 사회적 우려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건강 역량이 있지만 행사하지 않아서 생기는 건강 악화는 개인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쉽게 ‘피해자를 비난하는(victim blaming)’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Ten Have가 볼 때 Sen의 논리의 문제는 건강 역량이 보장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가정한다는 데 있다.

51 건강은 “현대 세계에서 최소한의 좋은 인간적 삶을 구성하는 기본적 역량들의 집합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인 메타역량(meta-capability)으로 간주된다(Venkatapuram, S. 2011. Health justice. An argument from the capabilities approach. Cambridge, UK: Polity Press. p.20)

그는 현실에서 역량에 대한 관심이 정의의 핵심 목표, 즉 그것을 성취할 자유보다는 단지 웰빙의 성취에 더 주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전세계적 정의의 문제인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④ 글로벌 돌봄(Global Care)

취약성이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라는 주장은 특히 페미니스트와 돌봄 윤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그는 인류학적 취약성은 인류에게 전형적인 공통 조건이며, 인간의 주체성과 활동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정의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개방성을 의미하고 사람들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곤경이라고 볼 수 있다. 취약성에 대한 철학적 관점은 다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데, 그는 이것이 바로 철학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이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적,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취약성이 심화될 때 일부 사람들은 특히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취약성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연결되어 있고 의존적라는 사실은 권력 불평등, 따라서 폭력과 지배, 착취, 주변화 그리고 차별의 가능성이 동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봄 윤리는 취약성 문제를 계속 다루어 왔지만, 그 개념을 세계화 측면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돌봄 윤리는 글로벌 돌봄 고리(circle)와 관련하여 세계적 측면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초기 돌봄 윤리에서는 타인과의 합의적 관계 속에서 돌봄이 이뤄지는 사적 영역을 주로 고려했었다. 하지만 최근 Joan Tronto 같은 학자들은 글로벌 영역까지 돌봄 윤리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는 돌봄은 ‘사회 구조와 사회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개인의 실천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 관점을 가지는 데 적합한 개념이다’라고 주장한다.

A. 세계화의 영향

세계화 과정은 돌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국가 내 돌봄 방식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유국에서 빈곤국으로 돌봄 인력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돌봄 유출(care drain)’ 현상은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주 돌봄종사자들이 선진국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부양가족을 버려두고 떠나는 현실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권력의 차이를 재강화하는 ‘글로벌 돌봄 체인’을 만든다. 이 현상은 또한 여성들이 세계화로 인해 더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규범적

틀로서 돌봄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과제다. 전세계적 규모의 과정을 고려할 때, 돌봄 윤리의 기본 개념이 어떻게 그렇게 넓은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Ten Have는 개인적 애착 수준을 넘어서, 국경을 초월한 사회적 관계로서의 세계시민주의적 돌봄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과제라고 말한다.

B. 돌봄 담론의 세계화

Tronto는 돌봄 윤리를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옮기자고 제안하면서, 돌봄 윤리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Ten Have는 돌봄 윤리학자들은 취약성이 사회적, 정치적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도덕적 삶과 정치적 삶 간의 경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특정 범주를 취약하고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단지 권력 담론을 강화시킬 뿐이다. 또한 그들은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 사이의 현재의 경계를 거부해야 하는데, 돌봄을 주고 받는 일이 민간과 가족의 역할이라는 관점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는 돌봄을 사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윤리적 개념으로 사용하자는 Tronto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리고 돌봄 윤리를 공적, 정치적 영역으로 옮기는 것은 돌봄 윤리의 담론을 세계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그는 관계성(relatedness), 의존성(dependency)⁵², 책임(responsibility), 협력과 연대(cooperation & solidarity), 맥락성(contextuality)이라는 돌봄 윤리의 기본 개념을 글로벌 수준에서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C. 장점과 과제

그가 볼 때 돌봄 윤리는 도덕적 지향으로서 인간 존재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면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 상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의해 추진된 세계화 과정에서 잠식되었던 가치들을 복원함으로써 정책 변화와 정치적 행동의 영감과 토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어휘를 윤리 담론에 도입하는 장점도 있다.

글로벌 돌봄 윤리의 관점에서 사회는 자유로운 개인 간 계약에 기초하지 않는다. 사회는 공유된 취약성에 의해 만들어진 상호의존성에 기초한다. 일부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사회의 핵심이 돌봄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의존성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번영할 수 있는

⁵² 그는 자유는 '관계에서의 자아의 확장(expansion of self in relationship)'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의존성 개념은 만약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다면 우리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회다. 이것은 돌봄을 주고 받는 일이 집단적 활동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취약성은 연대를 필요로 한다. 누가 돌봄을 제공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돌봄이 시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요구하는 사회적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돌봄 제공은 민주 사회의 질을 반영한다.

한편 선진국의 돌봄 위기를 국외 돌봄 종사자를 유입시켜 해결하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돌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국제 관계(international relations)에서 단순히 돌봄 인력뿐만 아니라 권력과 부의 불평등,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차이 등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글로벌 돌봄 윤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 담론은 돌봄을 시장에서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관점을 장려한다. 그 결과 돌봄은 힘 있는 사람들이 구매하고 명령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으로 변형된다. 이러한 접근은 돌봄을 더 이상 공적 가치, 또는 사회결속력에 기여하는 지속적 사회 과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신자유주의 관점은 공공 정책에서 돌봄을 소외시키는 데 기여하면서, 돌봄이 ‘통제할 수 없는 취약성’을 반영한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하지만 그는 역량 관점에 따라 인간의 번영이 상품과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글로벌 정책은 돌봄의 우선적 가치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돌봄 윤리를 세계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자율적 개별 행위자에서 상호의존적 공동체로 초점을 전환하는 가운데 국가를 향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약화된 사회적 결속력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초국가적 기업들에게 특정한 책임을 부과할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국제기구(global institutions)와 그 역할이 글로벌 돌봄 윤리 관점에서 재정의되어야 하고, 초국가적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자로 행동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적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돌봄 윤리의 관점은 국가, 기업, 국제 기구 등을 ‘원자화된 도덕적 주체’가 아니라 전세계 네트워크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도덕적 공동체’로 인식한다. 그는 특히 취약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제는 국제적 ‘돌봄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돌봄 기구를 만들거나 기존 기구를 돌봄 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6) 소결

Ten Have는 개인주의적 생명윤리담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취약성 개념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했다. 우리는 그보다 넓은 차원에서 질문을 던졌지만, 취약성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와 지향에 있어서는 그와 우리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근대 자유주의적 인간관과

정의관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동일하다. 그는 취약성이 사회 정의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급진적 사상가들인 Levinas와 Butler의 이론을 주로 원용한 만큼 그의 취약성 논의는 충분히 비판적이고 변혁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의 논의로부터 몇가지 중요한 통찰과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인류학적 취약성과 특수 취약성 개념을 통해 철학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이 모순 없이 연결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관계론적 사유를 통해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 자체에 윤리적 책임이 전제되어 있다고 한 그의 주장은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반론에 맞서 취약성 개념을 사회윤리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는 인류학적 취약성 개념으로부터 사회적 연대의 동력을 확보하면서 특수 취약성을 ‘제거 가능’한 사회적 병폐의 산물이자 불평등 지표로 규정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할 당위적 근거와 목표를 제시한다. 그의 이러한 이론적 전략은 취약성을 기치로 하는 사회 운동을 기획할 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 그의 논의로부터 배워야 할 핵심 교훈은 ‘관계론적 전환(relational turn)’이라는 철학적 토대를 튼튼히 쌓은 상태에서 정치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적 주체라는 허구적 인간관을 허물지 않은 상태라면 취약성 담론은 피상적으로 소모될 뿐이다. 반대로 인류학적 취약성 패러다임을 전제로 운동을 전개할 경우 겉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약집단에 초점을 맞춘 요구인 듯 보이더라도, 지배체제 논리에 쉽게 동화, 흡수되지 않으면서 변혁적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논리와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취약성 담론의 부상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맞물려 있다는 그의 진단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취약한 주체가 사회 기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 자유주의 이념 자체에 도전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날 전세계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도외시하거나 경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취약성 담론은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도구로서 잠재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게이트 재단과 같은 자선자본주의(philanthrocapitalism)의 ‘인간적’ 면모를 홍보하는 인도주의적 도구로 전용될 위험이 크다. 신자유주의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인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취약성을 사회윤리에서 개인윤리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그 규범적 힘을 제거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역시 경계하고 돌파해야 할 대상으로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과 역량 접근이 지닌 주요 약점에 대한 그의 설명도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그는 인권 담론이 가진 규범적, 실천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인권 개념이 부재하다면 우리는 그저 시혜적 호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이 흔히 개인의 (소극적) 권리로 간주되며 권력 구조를 바꾸는 데 무관심하고 무력하다는 지적은 (서론에서 문제제기한 바와 같이) 사회권 운동이 큰 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단초가 된다. 그는 최근 보건의로 분야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사회권의 영향력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많은 국가들의 현실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의 판단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는 취약성 윤리를 통해 ‘개인화’된 인권 담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는 취약성을 ‘역량의 제한’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역량 접근 역시 개인주의적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역시 그동안 Sen이 말한 ‘건강할 수 있는 역량’ 개념을 이론적 근거 삼아 건강권 실현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역량 담론이 기본적으로 개별 원자적 주체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속한 것이라면, 취약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 정의를 구성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지닐 수밖에 없다. Ten Have는 역량 접근이 개인 자유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권력관계와 구조적 조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 하다.

역량 이론이 가진 장점은 분명하다. 흔히 도덕적 해이로 설명되곤 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의료이용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자원(의료이용)’을 건강으로 전환하는 능력의 차이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건강해질 수 있는 역량의 제약이 ‘제3의 요인’으로 고려될 때 의료필요도를 충분히 통제할 조건이라면 동일한 수준의 의료이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가정의 타당성은 약화된다. 기술적 측면에서 이 ‘전환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동일한 필요에 동일한 의료이용’이라는 원칙에 맞서는 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적지 않다. 하지만 역량 접근은 취약한 이들을 평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전혀 위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 우리는 역량 접근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어떻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가 취약집단의 낙인화 문제에 대해 제기한 반론은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는 특정 집단을 취약하다고 식별하는 것은 낙인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낙인을 막는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의 판단의 전제는 빈민, 성소수자, 미등록 이주민, 장애인 등은 우리가 취약집단이라고 명명하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취약집단을 식별하는 것은 그 취약한 개인들이 속한 사회적 환경을 비판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취약집단이라는 사회적 분류가 낙인을 야기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근대 자율적 주체를 이상적 모델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 상태를 ‘정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한 낙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른 이론가들과 차별화되는 낙인에 대한 그의 주장은 생각할 거리가 없진 않지만 논리적 허점이 많다는 점에서 반론이 불가피하다. 그가 제시한 두 가지 논거 중 먼저 후자의 경우, 취약한 주체가 사회의 중심 모델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진다면 그의 주장대로 당연히 낙인의 위험은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다. 미래에 어쩌면 달성될 지 모르는 사회상을 전제로 하고서 오늘 발생하는 문제를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당위적 목표와 현실 대응은 구별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그가 지적한 것처럼 실제 취약집단으로 호명되기 전부터 그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으로 인해 낙인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낙인이 찍혔다고 해서 그것을 더 악화하는 일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취약집단 식별이 그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충분치 않은 의견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취약한 이들의 개별 특성이 아닌 사회적 과정과 구조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이 우리의 가치체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자고 하는 의견이 우세해지보다 오히려 제한된 복지 자원을 놓고서 서로 자기가 더 취약하다고 다투는 ‘취약성 경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왜 그는 취약성을 기준으로 특정 집단을 범주화할 때 발생하는 낙인화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일까? 아마 그가 생명윤리학자로서 임상시험에서의 취약집단 보호 효과를 비중 있게 고려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의 낙관적 태도는 “우리가 인류학적 취약성을 인정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의 가능성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발언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낙인 문제는 취약성 옹호론자와 회의론자가 부딪히는 첨예한 논쟁점이다. 새로운 사회 정의론의 측면에서 취약성 개념이 그 해방적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낙인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공중보건 분야에 취약성 개념이 도입되어 활용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오히려 이를 문제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우리는 다음 절에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낙인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5. 취약성 비판: 취약계층과 낙인

앞서 살펴본 Fineman, Mackenzie, Ten Have 등의 논의에서는 사회 정의의 이론적 토대로서 취약성 개념이 지닌 가능성 측면에 보다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취약성 개념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 견해를 가진 연구자들도 적지 않다. 즉, 한편에서는 취약성이 진보적 가치의 성취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취약성을 억압적이고 문제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특히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취약성 담론의 부정적 함의를 분석한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후자의 입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1) Brown의 취약성 연구⁵³

Kate Brown은 현실에서 취약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천착해 온 영국의 사회정책 연구자다. 위기 청소년, 성노동자, 약물중독자, 반사회적행동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과 규율 과정에서 취약성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연구해 왔다. 그는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경험이 있고, 이것이 자신의 연구 주제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직접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적,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실적 감각에 기반한 그의 연구결과를 통해 취약성 개념의 ‘현실’을 어느정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Brown은 취약성 개념의 상반된 두 관점을 균형 있게 다루며 신중한 접근을 취한다. 하지만 그의 현장 경험 연구는 취약성 담론의 어두운 그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철학, 윤리학 분야에서 취약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져 온 편이지만 현실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취약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국내 경우를 살펴봐도 관련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이론적 논의와 함께 그가 취약 청소년들과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⁵³ 관련 내용은 다음 문헌들의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Brown, K. 2011 “‘Vulnerability’: Handle with Care”, *Ethics and Social Welfare*. 5(3): 313~321.

Brown, K. 2017. “The governance of vulnerability: regulation, support and social divisions in 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37(11/12): 667~682.

① 시대정신(Zeitgeist)으로서 취약성

Brown은 사회복지 개념으로서 취약성에 대해 우리가 가진 생각이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하고 분류하고, 시민의 삶에 대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며,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고, 우리의 사회적 의무를 규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주목한다.

그는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이 취약성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관계적 의미(누군가 질병과 같이 특정한 것에 취약할 경우)보다 독립적 용어(즉, 취약한 누군가를 지칭)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취약계층으로 지칭되는 광범위한 집단이 있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층, 노숙인, 성노동자, 난민, 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이 대표적 예다. 그는 정책 분야에서 취약성이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학대아동 보호와 같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약물중독자와 같이 특정행동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이다. 그는 취약성 개념이 가치편향적(value-laden)일 수밖에 없음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가치중립적(value-free)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이것이 바로 취약성 개념이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는 취약성 개념이 오늘날 복지와 형사사법정책과 관행의 많은 부분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다고 말한다. 특정 개인과 집단을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체성과 잠재력의 제한과 함께 자원배분의 정당성에 대한 강력한 규범적 암시를 나타낸다. 영국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주택 배정에서 법적으로 ‘우선적 필요(priority need)’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현대 형사사법시스템의 통제적 개입은 특히 청소년 사법의 경우에 지원과 보호 요소가 함께 얽혀 있다. 특히 점차 임파워먼트가 강조됨에 따라 돌봄과 사회적 통제는 갈수록 더 복잡하게 얽혀 가고 있다. 그는 특정 시민이 취약하다면 특별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치, 정책, 관행, 담론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각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취약성 모티브(motive)가 오늘날 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고찰한다. 그는 인구집단 유형을 추적하는 하나의 기술로서 사회과학이 부상하였고 그 결과 특정 집단의 부정적 양상을 다루기 위한 개입 수단이 고안되면서 그들이 지식의 대상이자 우려의 표적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취약한 주체의 등장은 사회정책의 ‘치료적 전환(therapeutic turn)’을 초래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관주의의 증가와 새롭고 은밀한 방식의 ‘자기 통치’와도 관련되어 있다. 또 저소득, 저학력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감독과 감시,

또는 문제가 되는 행동과 생활 방식에 대한 치료적 강조를 내세우는 ‘신행동주의(new behaviourism)’, 행동경제학의 넛지 등의 출현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취약성과 관련된 두 상반된 관점 사이의 긴장에 대해 고려한다. 먼저 그는 취약성 개념에 대한 비판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온정주의적, 억압적** 개념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통제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이나 집단을 취약하다고 지칭하는 것이 이들을 사회적으로 **낙인 찍거나 배제**하는 배타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에 따르면 ‘위험 사회’ 개념과 관련하여 취약성과 온정주의적 통치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취약성 용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것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일상생활의 새로운 중심이 된 ‘공포 문화’가 반영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또 취약성에 대한 강조가 증가할수록 허용가능한 행동과 자립 개념의 강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회통제의 측면에서 이해할 여지가 있다. 오늘날 고도로 시장화된 정치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개인 행동을 표적 삼는 정책 개입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통제의 강화는 사람들이 안전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행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취약함이라는 꼬리표가 분리, 배제, 불평등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많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정치이념에 따라 취약성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말한다. 정치적 좌파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위해를 야기하는 사회 구조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 개입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취약한 시민’이라는 생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우파는 사람들이 때때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시장지향적 사회시스템 내에서 불행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예외를 만드는 한 가지 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 맑스주의자들은 취약성을 자율성 강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권력 결핍의 한 증상으로 보는 반면, 경제 자유주의자들은 취약성을 기업가정신의 결핍으로 이해하고자 하는데, 이때 두 접근법 모두에서 취약성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의미한다.

한편 그는 역시 취약성 개념이 사회 정의를 성취하기 위한 변혁적인 이론적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편적 취약성 이론에 관하여 그는 이것이 취약성에 대한 대안적 이론화로서, 현재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취약한 주체’ 개념에 잠재된 유해한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이해한다. 이 접근법을 취하는 이론가들 간 견해 차이가 있지만, 자율적 주체성이라고 하는 지배적 서구철학 전통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공통된 특성을 볼 때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그는 취약성이라는 개념이 때로는 온정주의적 개념으로, 때로는 사회 변혁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취약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총동들을 억제하고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일 수 있다. 또 반대로 다른 이들에게는 취약성이 특정 집단을 시혜 대상으로 여기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조장하는 용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취약성은 사회정의, 윤리, 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잠재적으로 강력하고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취약성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든, 그리고 누가 취약자로 분류되든 간에, 이 용어는 오늘날 강력한 ‘도덕적 함축(moral connotations)’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할 윤리적 의무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그는 취약성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것을 제안한다. 취약성을 이해하는 유일한 관점은 아니지만 그는 취약성이 가진 ‘결핍지향적 속성(deficit-orientated nature)’과 낙인과의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론적 검토에서는 양측 관점을 균형 있게 수용하는 듯 보였으나 결론적으로 그는 자신의 활동경험과 연구결과를 근거로 취약한 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취약성 개념을 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데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② 취약 청소년 대상 연구

Brown은 정책 담론과 프레임에서 취약성이 부상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라고 본다. 취약성 용어의 참고문헌 인용 사례가 195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의미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취약성 개념은 광범위한 정책 문제와 거버넌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실제 개입이 이뤄지는 데 취약성 개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능동적 시민권(citizenship)을 긍정하는 정치체제 내에서 취약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숙고한다. 취약한 시민은 특정 측면에서 시민권의 대척점에 있으며, 허약하고 의존적이며 기업가정신이 결여되어 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다른 측면에서 취약한 사람들은 국가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이자 ‘지원’ 대상으로 간주된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취약성 담론은 이들이 자신의 건강이나 복지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식을 모른다고 하는 전제 위에서 국가적 통제의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즉, 취약성의 통치(거버넌스)는 보호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통제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2010~2011년, 영국의 한 대도시(인구 약 75만 명)에 거주하는 ‘취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취약성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탐색하는 심층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12~18세의 청소년 25명과 인터뷰를 통해 취약성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물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 15명과도 면담조사를 수행하여 다양하고 경쟁적인 취약성 내러티브(narrative)를 조사하였다.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면담한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에게 취약성은 특정 정체성 집단이나 공유된 사회 환경(부모의 가정폭력, 정신건강문제), 문제적 행동(불법, 약물 사용 등)에 대한 하나의 ‘분류자(classifier)’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는 취약성 내러티브가 구조적,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부분 인터뷰에서 종사자들은 취약성을 보다 상황적, 개인적 용어로 구성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취약성** 개념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 어떻게 그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가족 개입 프로젝트 매니저)

취약성에 대한 평가가 사례별 복지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할 때 취약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서비스 이용자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이것을 취약성 내러티브가 개인적 결함, 상황적 또는 감정적 측면에서 사회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취약성 내러티브는 빈번히 ‘바람직한’ 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을 암시했다. 한 면담 대상자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구제’하려는 경향에는 저항해야 하지만, 이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면담 내용을 토대로 Brown은 취약성에 대한 지원과 위반에 대한 통제가 넋지나 사회규범 준수 측면에서 프레임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행동과 생활방식의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맞지만, 이 과정이 불평등 상황을 영속시키는 특정 관점을 강화하면서 처벌적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프레임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그는 취약 청소년들을 기업가적 주체로 바꾸려는 ‘결핍기반 개입요법들(deficit-based intervention regimes)’을 포착하고, 이것이 다음과 같이 주로 제한된 조건 속에서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우리는 그들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은 제가 많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 청소년이 ‘내 우선순위는 축구팀이에요’라고 말합니다. 그 엄마가 그의 기본 욕구(의식주)를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근본적인 취약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말이죠. 실제로 그가 원하는 것은 축구 셔츠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도박으로 돈을 허비하면서 아침식사도 차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취약아동지원서비스 종사자)

이어서 그는 취약성 내러티브가 규범적 측면을 경시하는 가운데 보호 조치들을 위주로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취약성에 대한 이해가 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역경 속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결함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다음으로 Brown은 취약청소년과 면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일단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취약하다’는 생각에 저항감을 나타냈다. 이는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의존성, 허약성, 취약성으로 분류되는 것에 격렬히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다. 그는 9살 때 리투아니아에서 영국으로 이주하여 (폭력적 관계를 경험했고 성산업에서 일했던) 어머니와 함께 홈리스 호스텔에서 살고 있는 12살 Anna와의 대화 내용 중 일부를 제시한다.

Brown: 사람들이 네가 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때?

Anna: 난 그저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 할 뿐이에요. 나는 일을 하면서 그걸 해결하니까. 그것으로 끝이고. 난 그저 미래를 바라볼 뿐이에요

그는 이와 같은 태도가 인터뷰 대상자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났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를 ‘긍정적 미래 지향성(positive future orientation)’으로 해석하며, 청소년들의 삶에서 하나의 ‘보호적 요소(protective factor)’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개인적 어려움, 즉 자신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취약성 내러티브들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지만, 대부분 청소년들은 이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청소년들의 취약성에 대한 내러티브가 실천가들의 내러티브보다 주체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정책과 실천에 있어서의 어떤 한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역경들에 관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정책 대응에 있어서는 취약성 통치의 부정의를 정상화하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취약성 내러티브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무력함(powerlessness) 때문에 무시 받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양상이 낙인화 프레임을 통해 실제 이들의 무력함을 한층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취약성 내러티브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 방식이 맥락의존적이라고 보며, 또 구체적 관계나 상호 작용을 통해 그들의 내러티브가 ‘정제되는(refined)’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그는 청소년들의 응답에 양면성이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취약성 내러티브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취약하다고 지목되는 것은 나에게 더 강해질 수 있는 원동력을 줘요. 만약 내가 연약하다고 보여지지 않았다면 태권도를 배우지 않았을 것이고 무술에 심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오늘 내가 하는 일 중 일부에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네, 취약하다는 사실은 모닝콜과 같았고, 나는 굳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는 당사자가 하나의 정형화된 방식으로 취약성 범주화를 수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취약한 서비스 대상자들은 복지 지원과 통제 속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반응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하고 있었다. 그는 사회복지사들의 취약성 내러티브에서 핵심적 요소였던 ‘활성화(activation)’가 청소년들의 반응과 일치하지 않은 까닭을 취약성에 대한 그들의 경험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분석 결과를 고찰한다. 우선 그는 대부분의 취약성 내러티브가 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경시하는 가운데 사회적 문제를 대표하는 특정 집단의 구성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사회적 불이익을 얼마나 병리화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사회복지 실천가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는 시민을 ‘의존성’에서 벗어나 보다 ‘기업가적’ 실천의 방향으로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취약성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취약성 내러티브에서 드러나는 설득과 처방은 권력이 어떻게 규제적일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하게끔 만든다는 의미에서) ‘생산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오늘날 취약성의 부상은 때로 부정의를 명명하고 해결하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취약한 이들의 행동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통제의 분화된 실천의 일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주체성을 강화하는 취약성 통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러한 취약성 통치를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모두의 의식에 환원될 수 없는 효과로 스며드는 어떤 ‘진화하는 과정(evolutionary process)’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보다 넓은 제도적 요인과 힘들에 의해 구조화되는 개인들 간 상호작용과 권력 역학(power dynamics)이 그러한 과정에 근본적 요소라고 말한다.

물론 그는 취약성 내러티브가 ‘취약한’ 사람들의 삶과 정체성 구축에 대한 당사자들의 역할을 추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도한 책임화(over-responsibilisation) 없이 어떻게 이러한 복잡한 상황들을 내러티브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있다. ‘능동적’ 주체성이라는 특정한 유형을 부각시키고 국가 통제에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취약한 이들은 다양한 존재 전략을 추구하는 분화된 자원을 가진 창조적 행위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취약한 이들을 매우 불평등한 사회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것이 규제 메커니즘의 증대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다.

그는 취약성을 보편적 인간 경험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취약성 내러티브를 통해 사회적 분할과 통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우리 몸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출 때 발생하는 어떤 의무들이 새로운 사회 정의의 가능성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보편적 취약성 접근법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통제와 지원이 다양한 개입을 통해 점점 더 일치되고 확장되고 있는 조건부적인 복지 맥락 속에서는 이것의 급진적 잠재력이 발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는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의 취약성을 덜 ‘본질화(essentialising)’하는 방향으로 취약성 내러티브를 수정하는 신중한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2) 보건과 취약성

Brown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현장에서 취약 아동청소년과 복지 실무자들이 취약성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규명하였다. 아쉽게도 보건의로 분야에서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수행된 질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취약성 개념의 부정적 함의에 대한 학계 내 문제의식이 별로 크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증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의 보건학계에서 취약성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비판적 관점이 담긴 일부 연구와 논평이 출판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들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모호함, 권력 그리고 보건: 보건학 논문에서 ‘취약함’의 용례⁵⁴

Katz 등의 캐나다 토론토대학 연구진은 그동안 많은 보건학 학술논문들이 취약성 개념의 정확한 정의를 생략한 채 사용해 온 경향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통상적 어법에 따른 부주의의 결과일 수 있지만, 어떤 체계적 요인으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특히 이러한 모호한 표현이 결과적으로 실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더욱 그 가능성을 의심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연구진은 기존 보건의료 연구에서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모호하게 사용하는 것이 보건 문제의 구조적 본질을 감추는데 기여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를 밝히기 위한 텍스트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대상 문헌은 일차적으로 2015~2018년 동안 미국 보건학회지와 캐나다 보건학회지에서 출판된 논문들 가운데 제목과 초록, 키워드에 ‘취약성’이 포함된 것들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취약성’이 최소 세 차례 이상 본문에 언급되었으면서 동시에 한 번 이상 구체적인 정의 없이 모호하게 사용된 경우를 선별하여 총 23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사회적 과정과 담론, 권력의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텍스트에 내장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탐구하는 데 유용한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을 활용하였다.⁵⁵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연구진은 아래 인용문과 같이 다양한 주제의 텍스트에서 분명한 정의 없이 ‘취약인구(집단)’라는 용어를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에 대해 연구진은 특정되지 않은 취약집단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해당 논문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한다.

“많은 취약인구가 있는 주들에서 치과의사의 감독을 벗어난 치위생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⁵⁴ 관련 내용은 다음 문헌의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Katz, A. S., Hardy, B. J., Firestone, M., Lofters, A. & Morton-Ninomiya., M. E. 2019. “Vagueness, power and public health: use of ‘vulnerable’ in public health literature”. Critical Public Health.

⁵⁵ 연구진은 예방가능한 불건강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한다는 관점과, 식민주의, 인종주의, 여성혐오, 제국주의, 경제적 착취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이 문제에 책임 있다고 하는 인식을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많은 텍스트에서 인구집단의 취약성을 사회, 정치, 경제, 역사적 조건 이전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었다. 취약성이 생산되는 기전 또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사는 종종 여러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해 불리해지는 취약인구의 건강 결과와 보건 서비스 전달을 향상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위 인용문에서처럼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 취약성은 구조적 장애물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것이 ‘악화’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른 텍스트에서는 특정 집단의 내재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취약인구 가운데 정신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것은 인구학적 특징이라기보다 그들의 공통된 경험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요인의 결과일 수도(may be) 있다.”

위 인용문에서 해당 논문 연구자는 높은 유병률의 원인으로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지목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질병의 취약성이 인구집단의 민감성이나 인구학적 특징과 더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연구진은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특정 집단이 특별히 어떤 행동이나 조건에 취약하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취약성을 고집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연구진이 예를 든 한 연구는 이주민, 난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 관련된 연구 문헌을 고찰하면서 “이주민이나 난민 아동이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근거는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결론과 모순되게 여전히 이들을 “학대 위험성이 있는 취약한 집단”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한편 취약인구와 달리 충분한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전혀 취약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예컨대 미국 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집단들의 ‘필요(needs)’를 살펴본 한 연구는 제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의 긴 목록을 일일이 언급하면서도 정작 그러한 서비스가 대체로 백인들을 위해 설계되고 자원이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었다.

또 연구진은 많은 연구들이 나쁜 건강결과를 야기하는 정책과 법률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정책 결정에 책임이 있는 집단, 그리고 이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었음을 문제로 지적한다. 분석이 철저히 ‘취약인구’의 건강상태, 사고방식, 생활조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누가 취약 집단이며 왜, 어떻게 취약한지에 대해 연구자들이 ‘빈칸’으로 남겨둘 때 독자들은 이를 스스로 채워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소수인종의 유전적 열등성을 주장하는) ‘**과학적 인종주의**’처럼 기존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거짓된 생각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결과 취약성은 개인의 ‘나쁜 결정’이나 ‘부정적인 행동’ 또는 생물학적 운명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될 위험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보건의 역할은 1)취약집단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2)취약집단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보호하며, 그리고 3)원래부터 취약한 이들이 더 취약해지지 않도록 외부영향을 완화하는 데 그치게 된다.

둘째, 연구진은 취약성과 관련된 담론이 권력 관계를 은폐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기존 학술문헌에서 통용되고 있는 취약성 담론은 ‘유리한 자’와 ‘불리한 자’ 사이의 역학관계를 ‘자선’의 일종으로 나타내며, 그러한 불리함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유리한 자’가 맡은 역할을 교묘히 감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권력, 지식, 물질적 수단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더 강한 자에게는 타인의 취약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불리한 자를 착취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건강불평등을 초래한 착취의 역학관계를 묘사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기껏해야 문제를 완화해 줄 ‘말단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그치게 된다. 어떤 연구자들은 근본적 변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말단 개입에 초점을 맞춘 것일 수 있지만, 이러한 판단과정을 모르는 독자들로서는 문제의 근본이 바로 연구가 다루고 있는 ‘취약인구’에 있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다. 연구진은 권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보건 문제는 개입할 수 없는 고정된 ‘환경’과 개입 가능한 ‘취약인구’로 귀결되고, 이때 건강향상을 위한 권력자들의 책무성은 사라지게 된다고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자신들이 취약성을 모호하고 불확실하게 사용하는 경향에 내포된 근본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재 주류 담론을 고려할 때 어떤 집단을 취약하다고 명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대중적,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취약성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한다.

② 비판적 논평들⁵⁶

Clark과 Preto는 2018년 ‘캐나다의사협회저널(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취약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담은 논평(commentary)을 실었다. 그들은 Brown과 같은 기존 학자들의 비판적 논의들을 인용하면서 취약성 개념이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정당화하고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낙인(stigmatization)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취약성의 이러한 잠재적 함의를 고려할 때 다른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한편 그들은 취약성 용어가 가진 뉘앙스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보건의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해결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건강상태가 나쁜 이들을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는 ‘vulnerable’, ‘marginalized’, ‘underserved’ 용어들 간의 의미적 차이(semantic difference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vulnerable’은 문제를 내부에 위치시키는 반면, ‘underserved’는 미충족필요를 야기하는 체계적 이슈들에 좀더 관심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들은 개인 또는 집단 외부에 도전할 과제를 위치시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외부 요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건강불평등의 근본 원인의 영향을 완화하는 전략을 개발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들은 취약성 자체를 부정적 속성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취약성, 즉 고통, 비정상성, 장애 등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취약성을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덜어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그들은 취약성 개념이 우리에게 자율성을 증진하고, 참여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의 웰빙을 지원하는, 정의롭고 평등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윤리적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0년에는 ‘캐나다공중보건저널(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의 편집위원들인 McLaren 등이 우리가 앞선 살피본 Katz 등이 쓴 논문에 주목하며 짧은 사설(editorial)을 게재하였다. 그들은 이 연구가 그동안 보건학 연구 분야에서의 논의가 ‘다운스트림(downstream)’ 개입 방식에 치우쳐 있었다는

⁵⁶ 관련 내용은 다음 문헌들의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Clark, B., Preto, N. 2018. “Exploring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in health care”. CMAJ. 190 (11).

McLaren, L., et al. 2020. “Unpacking vulnerability: towards language that advances understanding and resolution of social inequities in public health”.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111:1~3.

Munari, S. C., et al. 2021. “Rethinking the use of ‘vulnerabl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43(3).

사실을 환기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저널에 게재되었던 기존 논문들 가운데 취약성 담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몇몇 연구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들은 취약성 개념에 대한 문제적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취약’ 인구집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비 지원경쟁(research funding competitions)을 지목한다. 아울러 그들은 저널 편집자로서 이 문제를 사설을 통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밝히면서 연구비 후원자를 포함한 학회 커뮤니티를 향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Munari 등의 연구자들은 2021년, ‘호주&뉴질랜드공중보건저널(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에 ‘취약성’ 용어의 사용을 재고할 것을 제안하는 논평을 게재하였다.

그들은 취약성 용어가 본질적인 결핍, 열등감 또는 무능함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이나 집단을 무력하고 보호가 필요한 ‘타자’들로 묘사하면서, 이들의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추가적인 낙인과 배제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취약성과 같은 ‘결핍’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불평등을 만드는 더 넓은 구조적 원인을 너무 쉽게 숨길 수 있고 이러한 원인과 구조적 힘의 불균형을 발생 또는 지속시키는 책임이 있는 이들을 은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특히 인종화된 담론에서 ‘취약함’이라는 용어가 별다른 반성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 그들은 이것이 원주민 집단 간의 건강격차를 설명할 때 인종화된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면서 건강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을 인종적 프로파일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프레임은 사회적 불평등과 ‘인종적 부적합(racial unfitnes)’ 사이의 상관관계를 끌어내어 취약하거나 ‘문제적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공중보건 커뮤니티를 향해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우리가 누가 취약한지 지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기로 선택한다면, 더 큰 정확성과 책무성을 갖기 위해 무엇이 사람들을 취약하게 만드는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맥락화하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취약성처럼 충분한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로 ‘marginalised’, ‘disadvantaged’, ‘at risk’, ‘underserved’, ‘disenfranchised’ 등이 있지만, 때때로 대체용어로 쓰이고 있는 ‘우선적 공동체(priority population or communities)’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보다 평등한 건강상태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집중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들은 취약성이 아닌 ‘우선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에 취약한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에 우선순위를 두는 ‘시스템’에 중점을 둘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선순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초점을 미래로 옮길 수 있으며, 무슨 자원이 누구에게 왜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다만 이 용어를 사용할 경우 투명성 측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건강불평등을 경험하는 개인과 집단의 요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가 그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부 투명성을 높이고 담론 전반에 걸쳐 보다 정교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보다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요구에 대한 더 큰 명확성과 가시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취약성 용어를 넘어서 보면 식민주의, 인종차별, 여성혐오, 제국주의, 경제착취와 같이 건강불평등을 촉진하고 영구화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려는 해결책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이끈다고 설명한다.⁵⁷

(3) 소결

이 절에서 우리는 취약성 개념의 실제적 사용이 낳는 부정적 함의에 주목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취약성 용어는 온정주의와 사회적 통제, 낙인과 배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취약성 내러티브를 분석한 Brown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적 양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우리가 살펴 본 Brown의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가와 취약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과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조건 속에서 취약성 개념이 다양한 의미로 변주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 주제로 좁혀 살펴볼 때 이 연구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함의는, 실제 사회복지서비스 개입이 (우려하는 대로) 취약한 ‘개인’의 결함과 행태, 역량강화, 치료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는 점과, 이들에 대한

⁵⁷ 그들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M. J. Anderson의 SNS 글을 인용하며 취약성 용어의 사용을 재고할 것을 권한다.

“지금부터 나는 ‘취약한 사람들(vulnerable people)’ 대신에 ‘우리가 정책 선택과 인종적 열등함 담론을 통해 억압하는 사람들(people we oppress through policy choices and discourses of racial inferiority)’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것이다. 말이 좀 더 길지만 문제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낙인 효과가 당사자들에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라는 점이다. 이는 취약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강한 저항감을 드러낸 당사자들의 내러티브로부터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특정 분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선불러 일반화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지 모르겠다. 아마 Brown이 속한 영국 사회보다 더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수준도 낮은 다른 국가를 배경으로 동일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이와 다른 방향의 함의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취약한 이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드러난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취약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충분히 예견된, 이와 부합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굳이 실증주의적 과학적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을 것이다.

Brown의 연구와 뒤이어 살펴본 공중보건 학계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적 논의들의 공통된 주장, 제언은 취약성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Munari 등이 제언한 것처럼) 그 맥락과 조건에 더 적합한 대체용어를 발견 또는 고안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굳이 사용해야 한다면 (Katz 등이 제언한 것처럼) 불평등 문제의 근본 원인을 오해하지 않게끔 가급적 명료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취약성은 난해한 다차원적 개념이다. 우리는 취약성이 지닌 보편적 의미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 정의론을 구축할 수 있는지 모색하려고 하지만, 현실적 맥락에서는 특정한 이들을 억압하고 낙인 찍고 배제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취약한 이들을 마땅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역시 상당수는 자신이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단지 의미론과 화용론을 명확히 구별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취약성은 통념적 의미의 취약성이 아니라고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취약성을 새로운 사회 정의를 위한 도구라고 선불러 단언하기 어렵다. 앞서 Ten Have가 취약집단에 대한 낙인 문제를 간과했던 것처럼 보편적 취약성 개념이 가진 원대한 '이상'과 그렇지 못한 현실 사이의 괴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않은 채 긍정성만을 강조할 경우 이로 인해 누군가 겪고 있을 고통을 무화시키고 오히려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근대 자율적 주체 패러다임의 영향 속에서 이뤄지는 미시적 접근과 시도들은 필시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회적 책무성을 촉구하는데 일정 부분 효과적일 수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자원 분배와 권력 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논의까지 나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취약성 담론을 활용한 어떠한 전략적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취약성 담론을 기치로 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독립적, 자율적 주체라는 이상이 허구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끌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노력이 동반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담론의 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사람이란 원자적 존재가 아닌 관계적,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존재론에 기초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와 방식의 운동이 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억압적 장치(보호를 빙자한 통제)로 작동하는 취약성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3.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의 목표는 보편적 건강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안적 사회 정의론으로서 취약성 개념이 얼마나 적합하고 유효한지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취약성 개념을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주요 이론적 논의와 입장들을 살펴보았다.

고찰 결과, 우리는 Fineman의 보편적 취약성 이론으로부터 국가를 향하여 보건 의료라는 자산(공공재)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함의를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Mckenzie와 Anderson이 논의한 관계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온정주의적 개입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는 Fineman의 접근을 보완하는 방식을 구상할 수 있었다. 이어서 Ten Have의 논의를 통해 취약성에 관한 철학적 접근과 정치적 접근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 또 인권과 역량 접근에 내포된 개인주의적 측면을 취약성 윤리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고찰하였다. 반면 Brown의 연구는 현실에서 취약성이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낙인찍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또 Catz 등의 연구는 취약성 용법이 불평등 구조를 은폐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위와 같이 취약성 옹호론과 비판론 모두 각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꼭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어느 쪽 주장이 더 큰 논증 부담을 지는지 따지는 일에 매달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만 현실 변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다. 만약 취약성 담론이 사회적 어려움을 개인화하는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억압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관점을 채택하여 취약한 주체 모델을 중심으로 한 사회 정의를 모색하는 길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다른 대안은 무엇일까? 반대로 근원적 연대성의 토대로서 취약성 개념이 지닌 잠재력에 주목하여 적극적으로 취약성 담론을 운동의 전략으로 활용할 경우, 필시 부딪히게 될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감(“난 절대 취약해지지 않을 것이다”)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낙인과 배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두 질문에는 공통적으로 오늘날 근대 자유주의 패러다임이 근본적 한계가 도달했다는 문제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방식의 대안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대안적 개념이나 이념, 담론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사회윤리로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취약성 개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대안 부재라는 현실적 이유로 문제적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당위적 요구를 그냥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을 통해 새로운 사회정의를 구축할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사상가 Castoriadis가 말했듯이, “과거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로 미래를 서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⁵⁸ 이 글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했지만 일찍이 취약성의 대안적 개념으로 ‘불확실성’에 주목했던⁵⁹ Butler는 최근에 ‘비폭력’의 윤리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하는 시도를 통해 새로운 평등주의적 상상계를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⁶⁰ 적어도 이 글에서 우리가 고찰한 논의를 토대로 볼 때, 모두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관계론적 관점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동시에 취약성이 지닌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용어라면 대안적 개념의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앞서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말했듯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운동 방식을 한 가지 가능한 답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 중심의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꼭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떤 개념도 투명하거나 중립적이지 않으며 권력 투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 개념이 갖는 의미는 권력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질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취약성의 부정적 효과, 취약성이 우리 머릿속에 연상시키는 심상(image)도 절대불변의 것은 아니다. 약자들에게 불리한,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바꾸면, 달리 말해 지배담론 권력에 구속된 취약성 개념을 재전유하고 해방시킨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보편적 취약성 운동 역시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권력관계 변화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권력관계가 바뀌면 동시에 취약집단에 대한 낙인 효과도 약화될 것이므로) 사실상 같은 과제인 것이다. 즉, 보편적 취약성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 정의를 구축하는 일과 약자들에 대한 낙인에 맞서는 일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이렇게 이미 틀 지어진 편향된 해석을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취약성 담론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나 온정주의적 국가권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권력을 강화해야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국가권력, 경제권력에 맞서는 시민사회의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에

⁵⁸ 이유선. 2012. “카스토리아디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적 상상”. 고지현 등. <포스트모던의 테제들>. 사월의책.

⁵⁹ Butler는 취약성 개념의 강점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당사자들의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온정주의적 권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새로운 정치학의 토대로 삼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⁶⁰ 주디스 버틀러. 2021. <비폭력의 힘>. 문학동네; 조현준. 2021. 비폭력의 힘과 평등주의 상상계. 비평과 이론. 26(1): 185~211.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자유, 인권, 정의, 평등, 평화와 같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단체와 집단을 ‘사회권력’의 범주로 포함시켜 이해한다. 그런데 사회권력에 속하는 모든 운동과 단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보편적 건강보장체계’를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근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극복을 공동된 목표로 삼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동안 동료 시민들의 적극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사회운동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나도 언젠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연대해야 하겠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근대 국가에서 사회보장을 가능케 하는 연대 원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비록 대중 운동 전략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여전히 ‘나’가 중심인 자유주의 패러다임 속에 머물러 있는 논리로 볼 수 있다. 반면 급진적 취약성 윤리는 ‘내가 더 이상 중심일 수 없다고 말한다. 권리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이 관계로부터 자아의 확장과 자유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서로 ‘관계없이’ 살면서 자기 삶만 책임지면 된다는 근대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이들이 꿈꾸는 세계의 모습이다.

오늘날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표현이 오용, 남용되고 있지만, “형이상학적 전제들, 의심되지 않고 사용되는 용어, 전형적 질문들, 추론의 경로들, 특유한 이론들, 그리고 이 이론들의 전형적인 적용범위와 양식이 결합된 것”⁶¹이라는 의미로 패러다임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한 한 가지 대항 담론으로서 (시대 상황과 맞물려 유행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성 개념이 동원되고 소모되는 일이다.

- 1) 공공성 제고에 따른 잠재적 수혜자들과 공공성 담론을 주도하는 집단 간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
- 2)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의제와 담론 개발은 한국인의 평균적 심성과 선호체계에 잘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 ‘관’이나 ‘관치’를 공공성과 동일시하는 사회적 통념을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4) 공공성은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느껴지는 어려운 개념이므로 가능하면 좀 더 분명한 의미를 가져서 정서적 감흥도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말로 분해할 필요가 있다.

⁶¹ 아이리스 매리언 영(김도균, 조국 공역). 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5)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바꾸어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런 사회가 될 경우 사회구성원 특히 서민대중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살기 좋아지는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인용문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공공성 담론이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로 제시된 내용이다.⁶²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주는 제안들이지만, 이것은 기존 패러다임의 범위 내에서 구상된 담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취약성 담론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취약성의 상징체계, 의미체계를 뒤집기 어렵고, 따라서 낙인과 배제 문제 역시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근대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기여’가 아닌 ‘존재’만으로 ‘존엄한 삶’을 위한 요구를 정당화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취약성은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운 난제와 같은 개념이다. Ten Have가 말했듯이 보편적 취약성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상상의 질서를 모색하면서도 동시에 숙명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 취약성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저항하면서도 ‘무취약성’이라고 하는 허구적 목표를 경계해야 하니 말이다. 특히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팽배한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취약성 개념을 활용하여 건강권 운동을 전개하고자 할 때 이 개념에 내포된 위험성을 면밀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어떻게 접근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명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 글에서 소개하고 고민한 생각들이 취약성을 도구 삼아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의 운동과 실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⁶² 신정완. 2007.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담론전략”. 시민과세계. 11. 40~53.

부록 1: 세미나 제안서

빈곤과건강 세미나⁶³

- '취약성'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 -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

1. 제안 배경과 목적

- 상대적 빈곤율이 15%를 상회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의료보장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료급여(3%)를 수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제때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교적 사정이 나은 수급자들 역시 불충분한 보장성(비급여와 낮은 질적 서비스)과 여러 형태의 제도적 차별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의료비 지출의 안정화(효율화)가 제도운영의 핵심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의 지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조치 하고 있지 않은 까닭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타까운 사실은, 정부가 재정절감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국민 다수의 (암묵적) 동의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정책기조가 바뀌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곧 더 많은 세금 부담과 무기여자들의 무임승차 문제로 환원하여 인식하는 동료 시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식의 ‘토대’가 되는, ‘사회 정의’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 빈곤층의 건강보장 문제는 여전히 보편타당한 ‘권리’라기보다 제도적 ‘시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근대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대의 ‘권리’ 개념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간의 ‘쌍무적 호혜성(exchange reciprocity)’을 전제로 합니다. 즉, 시민의 권리는 의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근대 사회계약론적 정신이 지금 사회의 ‘공정함(fairness)’에 대한 주류 인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별다른 기여 없이 혜택’만’ 누리려는 이들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질서의 안정과 통치의 정당성 확보에 필요한 수준만큼’만’ 재원을 투입하며 문제를 ‘관리’해도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적 재정운영 정책기조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정함’에 대한 신념, 즉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평등한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대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근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두에게 정의롭고 평등한, ‘실질적’인 보편적 건강보장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철학적 토대이자 대안적 담론 전략을

⁶³ 시민건강연구소 누리집에 게시된 세미나 참가자 모집 공지 글임(<http://health.re.kr/?p=9053>, 2022년 4월 21일)

모색하는 일입니다. 이번 빈곤과건강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개념 중 하나로서 ‘취약성(Vulnerability)’ 개념이 가진 활용가능성(적합성과 실효성)과 한계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우리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이라는 표현과 인체대상 연구윤리에서 거론되는 수준의 의미에 익숙하지만, 취약성은 그보다 넓게 사회정의론의 차원에서 모두를 하나의 토대로 묶을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잠재가능성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페미니즘 돌봄 윤리에서는 근대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율적 주체 개념에서 상호의존적, 관계적 주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달리 취약성 개념은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을 ‘병리화’하고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또 취약성 개념을 지지하는 이론가들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서로 견해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정 관점과 노선을 취하기에 앞서 취약성 개념을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러 이론적 논의와 시각을 살펴보며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참고: 이 세미나는 인적자본론과 같은 빈곤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을 지양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해를 높이길 원하는 분들은 에드워드 로이스의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2015, 명태) 1부,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계속 가난한가?>(2019, 동녘), 김윤태와 서재욱의 <빈곤>(2013, 한울) 1~4장 등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2. 진행 방식

- 일시: 격주 토요일 오전 10-12시, 5월 14일(토) 첫 모임(2022년 7월 23일 종료 예정)
- 장소: 시민건강연구소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 보도 3분)
- 운영방식: 온라인 세미나를 기본 방식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유행과 세미나 참여자의 요청 등에 따라 일부 모임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격: 공통의 주제를 놓고 함께 공부하고 논의하는 모임인 만큼 전체 세미나 일정을 빠짐 없이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맡은 문헌에 대한 발제를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인해 발제를 맡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를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명)
- 코디네이터: 김선, 정성식 (이 모임에 조교/보조원 개념은 없습니다.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나이와 관계없이 자료 복사와 다과 준비, 뒷정리를 공평하게 분담합니다)
- 문의 및 신청: 2022년 5월 6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3. 학습 내용과 일정

일정	주제와 문헌
1회차 (5/14)	<p><u>Universal Vulnerability theory (Fineman)</u></p> <p>1) Fineman, M. (2008). The vulnerable subject: anchoring equality in the human condition. <i>Yale Journal of Law and Feminism</i>, 20(1), 1-24.</p> <p>2) Fineman, M. (2010). The vulnerable subject and the responsive state. <i>Emory Law Journal</i>, 60(2), 251-276.</p>
2회차 (5/28)	<p><u>Vulnerability and Relational Autonomy (Mackenzie)</u></p> <p>1) Mackenzie, C. (2013). "The Importance of Relational Autonomy and Capabilities for an Ethics of Vulnerability". in Mackenzie, C., Rogers, W. & Dodds, S.(ed.) <i>Vulnerability: New Essays in Ethics and Feminist Philosophy</i>. New York: Oup Usa. p.33~59.</p> <p>2) Anderson, J. (2013). "Autonomy and vulnerability entwined". in the same book. p.134~161.</p>
3회차 (6/11)	<p><u>Bioethical, Philosophical, Political perspectives on Vulnerability</u></p> <p>Ten Have, H. (2016). <i>Vulnerability: Challenging bioethics</i>. London. Routledge</p> <p>Chap. 4. The bioethical discourse of vulnerability</p> <p>Chap. 5. We are all vulnerable: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vulnerability</p> <p>Chap. 6. Some of us are more vulnerable: Political perspectives on vulnerability</p>
4회차 (6/25)	<p><u>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applications of Vulnerability</u></p> <p>Ten Have, H. (2016). <i>Vulnerability: Challenging bioethics</i>. London. Routledge</p> <p>Chap. 7. Vulnerability is everywhere: Globalization and vulnerability</p> <p>Chap. 8. Theoretical implications of vulnerability</p> <p>Chap. 9. Practical applications of vulnerability</p>
5회차 (7/09)	<p><u>Critical perspectives on Vulnerability (1)</u></p> <p>Brown, K. (2011). 'Vulnerability': Handle with Care, <i>Ethics and Social Welfare</i>, 5:3, 313-321.</p> <p>Brown, K., Ecclestone, K. & Emmel, N. (2017). The Many Faces of Vulnerability. <i>Social Policy and Society</i>, 16(3), 497-510.</p> <p>Brown, K. (2017). The governance of vulnerability: regulation, support and social divisions in action. <i>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i>, 37(11-12), 667-682.</p>
6회차 (7/23)	<p><u>Critical perspectives on Vulnerability (2)</u></p> <p>Brown, K. (2014). Questioning the Vulnerability Zeitgeist: Care and Control Practices with 'Vulnerable' Young People. <i>Social Policy & Society</i>. 13:3, 371-387.</p> <p>Mitchell, E. (2019). Negotiating vulnerability: The experience of long-term social security recipients. <i>The Sociological Review</i>. 1-17.</p> <p>Katz, A. S., Hardy, B. J., Firestone, M., Lofters, A. & Morton-Ninomiya., M. E. (2019): Vagueness, power and public health: use of 'vulnerable' in public health literature, <i>Critical Public Health</i>.</p>

부록 2: 세미나 참가자 명단

세미나 일시	발제 문헌	발제자
1회차(5/14)	Fineman(2008)	정성식(시민건강연구소)
	Fineman(2010)	김선(시민건강연구소)
2회차(5/28)	Mackenzie, C. (2013)	이수빈(정책학 박사)
	Anderson, J. (2013)	이영실(서울대 보건대학원)
3회차(6/11)	Ten Have, H. (2016). 4장	박유경(강원대학병원)
	Ten Have, H. (2016). 5장	김익한(고신대 의료인문학과)
	Ten Have, H. (2016). 6장	김태현(한양대 보건대학원)
4회차(6/25)	Ten Have, H. (2016). 7장	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
	Ten Have, H. (2016). 8장	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Ten Have, H. (2016). 9장	최윤주(중앙대 예방의학교실)
5회차(7/09)	Brown, K. (2011)	강민구(고려대 예방의학)
	Brown, K., et al (2017)	서은솔(서울대 보건대학원)
	Brown, K. (2017)	정성식(시민건강연구소)
6회차(7/23)	Brown, K. (2014)	문다슬(시민건강연구소)
	Katz, A. S., et al (2019)	장은지(서울대 보건대학원)
	commentary 3편	조승원(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시민건강연구소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됩니다.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3길 36, 2층

전화: 02-535-1848 / 팩스: 02-581-0339

누리집: <http://health.re.kr> / 전자우편: people@health.re.kr

후원계좌: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연구소